

차례

I. 총괄	1
1. 목 적	3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가. 일반 사항 / 3	
나.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 3	
다. 보육시설 세부운영규정 / 3	
3. 서울시 보육시책 기본방향	4
II. 주요 변경내용	7
III. 보육료	13
1. 서울특별시 보육료 한도액	13
2.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한도액	13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13
4. 수익자 부담금	14
IV.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17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17
가. 개요 / 17	
나. 공인절차 / 18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 19	
2.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19
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19	
나.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 20	

다. 클린운영 / 23	
라. 기 타 / 23	
3.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24
가. 지원조건 / 24	
나. 지원내용 / 24	
다. 급여 호봉기준(민간시설) / 27	
4. 보육도우미 지원	28
가. 지원대상 / 28	
나. 지원조건 / 28	
다. 지원기준 / 28	
5.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29
가. 기본사항 / 29	
나. 공인취소 사유 / 29	
다. 공인취소절차 / 30	
라. 공인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31	
V. 맞춤형(취약)보육시설의 지정 · 운영	35
1.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35
가. 목 적 / 35	
나. 운 영 / 35	
다. 설비기준 / 35	
라. 대상시설 및 정원 / 35	
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 / 35	
2.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36
가. 목 적 / 36	
나. 운영방향 / 36	
다. 지정 대상시설 / 36	
라. 시설 및 운영기준 / 37	

3. 시간제 보육시설	38
가. 목 적 / 38	
나. 지정대상 / 38	
다. 시설 운영기준 / 38	
4. 방과후 보육시설	40
가. 목 적 / 40	
나. 보육대상 / 40	
다. 보육내용 / 40	
라. 설치 및 운영원칙 / 40	
마. 시설장 / 40	
바. 운영시간 / 40	
사. 설치비 반납 / 41	
VI. 기타사업 지원기준	45
1. 보육료 지원	45
가. 보육료 차액지원 / 45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46
가. 0세아 전담 간호사 인건비 / 46	
나. 비상근교사 인건비 / 46	
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 47	
라. 휴일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 47	
마. 보육포털시스템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 인건비 / 47	
바. 대체인력 인건비 / 48	
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 49	
아.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 49	
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50	
3. 운영비 지원	52
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반당) / 52	
나.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 53	
다.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 / 53	
라. 보육교사 증식비 / 54	

4.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54
가. 장애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 54	
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 54	
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 55	
5. 보육사업비 부담비율	56
가. 국고보조사업 / 56	
나. 시비보조사업 / 57	
VII.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 기본 계획	61
1. 보육시설 지도점검	61
가. 기본방향 / 61	
나. 근거 / 61	
다. 원칙 / 61	
라. 지도점검 체계 / 62	
마. 중점점검 사항 / 63	
바. 보육시설 행정처분 기준 / 63	
사. 모범(우수) 보육시설 선정기준 / 64	
2.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64
가. 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 64	
VIII .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69
1. 목적	69
2. 2011 보수교육 계획	69
3. 교육과정별 대상 및 교육시간	70
4.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71
5.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72
6.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73

IX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77
1. 사업목적	77
2. 현 황	77
3. 이용안내	77
4. 2011 추진사업	79
4-1. 보육교사 연가 시 대체교사 지원	80
5. 보육정보센터 설치현황	82
X .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85
1. 설치목적	85
2. 설치개요	85
3. 이용안내	85
4. 주요사업	86
5. 기증안내	87
6. 장난감도서관 설치현황	87
XI. 서울시 영유아 플라자 운영	91
1. 사업개요	91
2. 기본시설	92
3. 설치현황	92
4. 지원내용	92
5. 영유아 플라자 운영	93
6. 영유아플라자 운영현황	96
XII. 다문화 다민족 자녀 어린이집 지정 운영	99
1. 목적	99
2. 지원근거	99
3. 추진방향	99

4. 연도별 다문화다민족 자녀 보육시설 지정목표	99
5. 지원대상	99
6. 지원내용	100
7. 2011년도 추진계획	100
8. 추진현황	100
9. 지정시설 운영안내	101
10.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지정현황	101
XIII.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105
1. 사업개요	105
2. 사업운영	105
3.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	106
4. 사업지원 내용	107
XIV. 보육 정보망 운영	111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	111
<보육포털시스템 운영지침>	
2. 보육료 지원 사전확인 시스템 이용 안내	112
별 지 1~4	113
부 록	123
■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125
■ 아동학대 등 발견시 조치 요령	128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129
■ 영유아보육법	137



I. 총괄

I. 총괄

1. 목 적

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일반 사항

보육관련 법규,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

나.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자치구는 관계법규 및 보건복지부·서울시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육사업지침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보육시설 세부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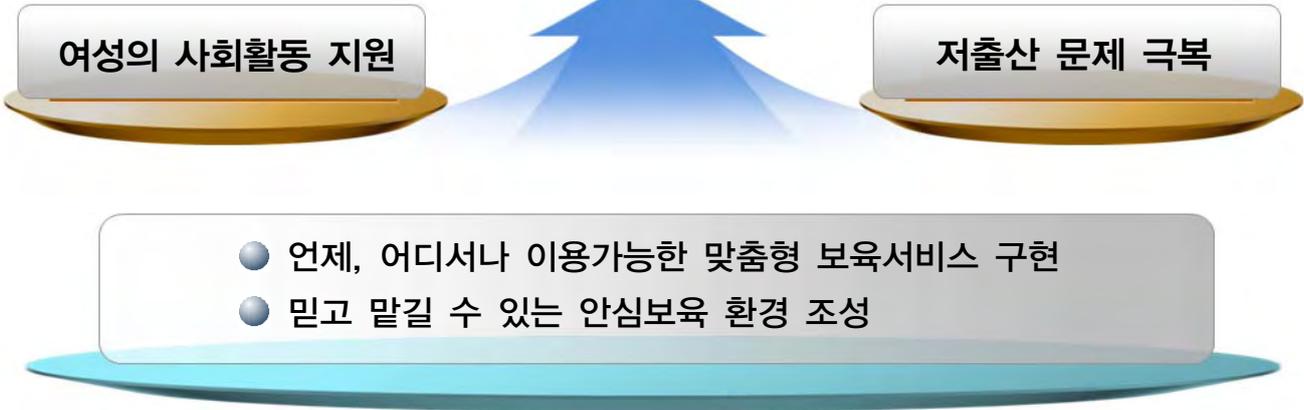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행정기관의 안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서울시 보육시책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공공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영유아플라자·키즈센터 운영 등으로 공보육 기반 강화
- 자율장학, 급식재료 공동구매제 등의 운영내실화 및 재평가 실시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 생활패턴 다양화에 따른 야간·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수요 충족
- 안전급식, 안전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보육 걱정 없는 서울



보육인프라확충 등 공보육 기반강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보육서비스 구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육시설 확충 • 서울키즈센터 건립 • 영유아플라자 운영 활성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도우미 지원 • 주치의 제도 운영 • 급식재료 공동구매 • 공인평가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운영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 다문화가족자녀 보육시설 지정 확대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적극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 보육시설 상사평가 체계 구축 • 시설 지도·점검 강화 • 현장과의 소통강화
--	--	---	--



II. 주요 변경내용

II.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0년도	2011년도																																				
III. 보육료																																						
1. 서울특별시 보육료 한도액 (p.1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th> <th>정부미지원</th> </tr> </thead> <tbody> <tr> <td>0세</td> <td>383,000</td> <td>383,000</td> </tr> <tr> <td>1세</td> <td>337,000</td> <td>337,000</td> </tr> <tr> <td>2세</td> <td>278,000</td> <td>278,000</td> </tr> <tr> <td>3세</td> <td>191,000</td> <td>243,000</td> </tr> <tr> <td>4세 이상</td> <td>172,000</td> <td>238,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0세	383,000	383,000	1세	337,000	337,000	2세	278,000	278,000	3세	191,000	243,000	4세 이상	172,000	238,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th> <th>정부미지원</th> </tr> </thead> <tbody> <tr> <td>0세</td> <td>394,000</td> <td>394,000</td> </tr> <tr> <td>1세</td> <td>347,000</td> <td>347,000</td> </tr> <tr> <td>2세</td> <td>286,000</td> <td>286,000</td> </tr> <tr> <td>3세</td> <td>197,000</td> <td>251,000</td> </tr> <tr> <td>4세 이상</td> <td>177,000</td> <td>246,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0세	394,000	394,000	1세	347,000	347,000	2세	286,000	286,000	3세	197,000	251,000	4세 이상	177,000	246,000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0세	383,000	383,000																																				
1세	337,000	337,000																																				
2세	278,000	278,000																																				
3세	191,000	243,000																																				
4세 이상	172,000	238,000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0세	394,000	394,000																																				
1세	347,000	347,000																																				
2세	286,000	286,000																																				
3세	197,000	251,000																																				
4세 이상	177,000	246,000																																				
2. 취학이동 방과 후 보육료 한도액 (p.1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th> <th>정부미지원</th> </tr> </thead> <tbody> <tr> <td>방과후</td> <td>86,000</td> <td>119,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86,000	119,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th> <th>정부미지원</th> </tr> </thead> <tbody> <tr> <td>방과후</td> <td>88,500</td> <td>123,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88,500	123,000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86,000	119,000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88,500	123,000																																				
4. 수익자 부담금 (p.14)	<p><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 및 지출 유의> ○ 특기(특별)활동은 오후 2~3시 이후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학습비의 경우 현장학습 계획에 의해 매월 수납, 매월 정산 하여야 한다</p>	<p><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 및 지출 유의> ○ 특기(특별)활동은 오후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학습비의 경우 현장학습 계획에 의해 매월 수납, 매분기 1회 이상 정산 하여야 한다</p>																																				
IV.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라. 기타(p.23)	<p>○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은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립시설의 기준 적용 - 입소우선순위</p>	<p>○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은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립시설의 기준 적용 - 입소우선순위 ※ 다만,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주민공동 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자녀를 다른지역의 거주자와 구분하여 우선 입소 시킬 수 있다.</p>																																				
3.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나. 지원내용(p.24)	<p>○ 민간시설 인건비지원 - 민간 서울형의 경우 만2세아와 만3세아는 원칙적으로 혼합반 운영이 불가하나 201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p>	<p><삭제></p>																																				

제 목	2010년도	2011년도												
4. 보육도우미 지원 (p.28)	○ 지원조건 - 기타 임면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보육교사 유자격자가 보육교사 보조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비담임교사의 경력 호봉 인정기준 준용)	○ 지원조건 - 기타 임면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경력 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임면 및 관리규정 준용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p.29)	○ 공인시설은 매번회 자체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나. 공인취소 사유 (p.29)	나. 공인취소 사유	<신설> ㉠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을 위반한 경우												
Ⅵ. 기타사업 지원 기준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바. 대체인력인건비 (p.48)	○ 자격 : 보육교사 자격기준 이상 (취사부 제외)	○ 대체인력 : 보육교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p.50)	○ 지원조건 <유의사항> 매월 1일기준(1일 공휴일이면 2일기준)으로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종사자로서 보조금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일할 정산하지 않음)	○ 지원조건 <유의사항> 매월 1일기준(1일 공휴일이면 2일기준)으로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종사자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3. 운영비지원 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p.52)	○ 지원요건 ① 모든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910천원(처우개선비 미 포함) 이상 지급 ② 신청일 현재 반당 현원이 50%이상일 때 지원(0세 2명 이상, 1세 3명 이상, 2세 4명 이상일 경우 지원), 2-3세 혼합반일 경우 2세 4명 이상	○ 지원요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연 령</th> <th style="width: 33%;">정 원</th> <th style="width: 33%;">지원총족인원 (5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0~1세)반</td> <td>3명</td> <td>2명</td> </tr> <tr> <td>만1세(1~2세)반</td> <td>5명</td> <td>3명</td> </tr> <tr> <td>만2세(2~3세)반</td> <td>7명</td> <td>4명</td> </tr> </tbody> </table> <p>① 모든 보육교사 노동부 임금고시 최저기준보수 (처우개선비 미 포함) 이상 지급 ※ 2012년 부터는 평가인증과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연계할 계획(보건복지부)</p>	연 령	정 원	지원총족인원 (50%이상)	만0세(0~1세)반	3명	2명	만1세(1~2세)반	5명	3명	만2세(2~3세)반	7명	4명
연 령	정 원	지원총족인원 (50%이상)												
만0세(0~1세)반	3명	2명												
만1세(1~2세)반	5명	3명												
만2세(2~3세)반	7명	4명												

제 목	2010년도	2011년도
<p>라. 보육교사 중식비(p.54)</p>	<p>○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야간) 교사 포함)</p>	<p>○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형교사 포함) ※ 시간연장형 교사 :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전담교사로 별도 채용한 경우만 해당 ※ 시설 운영비로 지원됨</p>
<p>VII.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 기본계획</p>		
<p>라. 지도점검 체계(p.62)</p>	<p>○ 모범 보육시설 서면 점검제 실시 - 관내 모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에 의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 을 받아야 하나 우수 보육시설의 사기진작 을 위하여 직전년도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단, 당해연도 민원발생시설은 제외 • 서면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점검 실시 • 보육시설 서면 점검양식은 <별지 4> 서식과 같음</p>	<p>○ 모범보육시설 등 서면 점검제 실시 - 우수 보육시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전년 도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현장지도 점검을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단, 민원발생시설은 제외 • 서면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점검 실시 • 보육시설 서면 점검양식은 <별지 4> 서식과 같음</p>
<p>XII. 다문화 다민족 자녀 어린이집 지정 운영</p>		
<p>6. 지원내용(p.100)</p>	<p>○ 보육도우미 지원 : 시설당 1명 -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준함 ※ 시비 전액 지원 - 아동과 학부모의 한글교육 운영비 : 시설당 매월 30만원</p>	<p><삭제> - 아동과 학부모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비(시 구비 50%:50%)</p>



III. 보 육 료

Ⅲ. 보 육 료

1. 2011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원)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시설
0세	394,000	394,000
1세	347,000	347,000
2세	286,000	286,000
3세	197,000	251,000
4세 이상	177,000	246,000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중 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

2.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 한도액

- 당해시설 4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시설
방과후	88,500	123,000

※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식비를 수납하여 제공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 한도액

- 시간연장 보육(19:30~24:00) : 시간당 2,700원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 정부 지원시설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150%
-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3,000원

4. 수익자 부담금

-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 배상(상해포함)보험은 시에서 일괄 가입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원 지적사항)

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 및 지출 유의 사항

-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 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특기(특별)활동은 오후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은 별도 비용 수납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급적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을 권장한다.
- 외부업체 또는 강사에 의한 특기(특별)교육 시행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교육비용, 교육횟수 등)
 -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동의서
 - 강사 출장부
 - 특기교육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 특기(특별)활동은 1학기 또는 1년분을 한꺼번에 수납하여서는 안되며 매월 수납, 매분기 1회 이상 정산하여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비 지출은 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학습비의 경우 현장학습 계획에 의해 매월 수납, 매분기 1회 이상 정산하여야 한다.



IV.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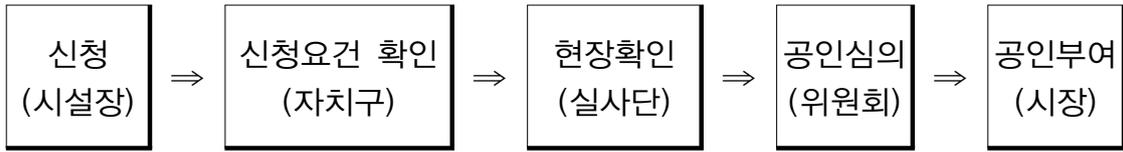
IV.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가. 개 요

- 대상시설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제외시설
 - 방과 후 전담시설
 - 공인 신청마감일 현재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중이거나 행정처분으로 공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설
- 공인 현장실사 지표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분야
 - 현장 실사자에 의한 현장조사
- 기타
 - 공인기간 : 정부 평가인증 취소 등 기타 취소사유 발생시까지
단, 3년마다 재평가 실시하여 기준미달 시설은 시정명령 후 정해진 기간까지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공인 취소
 - 수수료 : 없음.

나. 공인절차



- 신청(희망 시설)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원본)를 서울시에 제출

자치구 확인사항

- 정부평가인증 여부
-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 행정처분 여부 등

-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 서울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야기사실 및 서류 확인 후 서울형어린이집 현장실사단에 확인 의뢰
 - 서울형 어린이집 현장실사단에서는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 심의(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
 - 공인통과 기준점수 결정
 - 시설별 심의점수 부여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선정
- 결과통보(서울시)
 - 자치구를 통해 해당시설에 공인결과를 통보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및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인결과 게재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 교육이수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결정을 받은 시설의 시설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 이수
- 공인시설 정보제공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 명단을 게재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
- 공인시설 현판 부착
 - 공인시설에 대하여 공인증명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해당시설은 시설 전면에 부착

2.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가.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 구단위 맞춤보육 수급관리
 - 관할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장애아, 다문화가족자녀보육 등 맞춤(취약)보육 실시
 - 다만, 관할구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는 예외
 - 맞춤(취약)보육에 따르는 제비용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원 및 수납
- 실시간 보육정보 조회, 맞춤보육 one-stop 서비스 구현

보육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보육시설 인터넷 예약 및 이용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이용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http://iseoul.seoul.go.kr 또는 아이서울.COM, '09. 1. 5 오픈 운영 중) - 맞춤보육 등 보육서비스 제공현황, 대기아동 등 실시간 정보제공 ○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시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 장애아보육 이용 가능시설 지정 ○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정보 조회, 예약, 이용 			
			
인터넷으로 보육시설 검색	보육시설 정보조회	보육서비스 예약&신청	보육시설 이용

나.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단의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여부 확인
 - 시설에서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의 상시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도모

- 구 성
 -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 보육관련 전공자 및 관련 시설 근무 경험자 등
 - 2인 1조로 활동
- 기 능
 -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아동인권 분야 등 모니터링
 - 서울형어린이집을 포함 전년대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시설 방문점검 후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 매뉴얼 개발, 모니터링 모집, 교육, 수당지급, 분기별 활동실적 정리 및 결과보고, 모니터링 관리 등



○ 어린이집 주치의제 실시

① 주치의 주요기능

- 전염병 발생, 응급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 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 제공
- 부모에게 영유아 건강정보 제공

② 추진방법

서울시

- 주치의 운영 및 실적관리
- 주치의 활성화 계획 수립(주치의 인센티브 지원 등)

자치구(보육담당부서, 보건소)

- 자치구에서 보건소 및 대형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 주치의 협약 및 의료활동 관리·지원

어린이집

- 주치의제 희망 의료기관 중 거리,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곳과 “어린이집 주치의” 협정 체결, 체결 후 서울시보육포털에 주치의 정보 등록
-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과 직접 협정 체결 가능
- 반기별 활동실적 관리(6월, 12월 보조금 신청시 첨부)

○ 시설 및 차량운행 안전관리

① 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모서리보호대, 바닥미끄럼방지 등) 이행

- 미끄럼틀,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안전점검 실시

② 어린이 통학 차량 관할 경찰서 신고의무 이행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급식 안전관리

- ① 아동급식은 자체 조리하고 학부모에게 급간식 내용 공개
- ② 식재료 공동구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수

- ① 시설장 및 교사 : 의무보수교육 이행
 - * '09년부터 보수교육과정에 아동인권관련 과목 필수 편성
- ② 기타종사자 : 아동인권,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6시간

○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중심의 장학그룹을 구성하여 교사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시설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시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전체('10.12월말 현재 2,592개소)
- 그룹구성 : 자치구별 5~10개소 내외로 그룹 구성
- 멘토선정 : 장학그룹 내 시설장 중 1인
- 장학주제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관 주제 또는 영역별 주제 중 선정

② 추진체계

- 서울시(서울시보육정보센터) : 매뉴얼 제시, 공통교육(멘토, 참여시설) 실시 등 총괄
- 자치구(자치구보육정보센터) : 관내 장학그룹 및 멘토에 대한 지원 및 관리(그룹 구성 및 멘토선정 지원 및 보고, 자치구별 설명회/교육 실시, 장학계획서·결과 보고서 수합·제출, 자율장학 관련 강사 및 모임장소 지원 등)
- 멘 토 : 그룹 내 욕구 파악, 모임 진행 및 그룹단위 장학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장학그룹 총괄 운영
- 장학그룹 : 멘토 선정, 자율장학 주제 선정, 장학계획 수립 및 시행(그룹 단위)
- 개별시설 : 장학그룹 참여, 시설내 멘티교사 지정, 장학계획 수립 및 시행(시설 단위)

다. 클린운영

- 회계관리 계좌 단일화
 - 보조금과 보육료 등 일체의 수입·지출은 시설명의로 1개 계좌에 통합관리
 - 모든 수입·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특기교육비 등 일부 수입금 누락 방지
- 회계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 회계관리시스템(<http://imss.bccard.com/seoulcc> * 프로그램 자동설치)으로 회계관리하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 클린카드 발급 절차
 - ▶ 은행 지점(우리, 신한) 파악(보육시설 → 자치구)
 - ⇒ 은행 수요 파악결과 통보(자치구 → 시 → 은행 → 각 지점)
 - ⇒ 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사용(보육시설)
 - ※ 카드 발급 : 지정된 기간 내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신규 공인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사용 의무) 및 희망하는 어린이집
-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예산·결산·집행에 관한 사항
 - 공인이후 시설장 교육 예정

라. 기타

-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립시설의 기준 적용
 - 입소 우선순위
 - ※ 다만,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자녀를 다른지역의 거주자와 구분하여 우선 입소 시킬 수 있다.
 - 보육료 및 입소료 등 수납, 종사자 급여 등 필요경비 지출 등
 - 기타 공인시설로서의 제반사항 이행(다만, 차량운행은 가능)

3.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 운영
-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내용

- 민간시설
 - ①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시설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 ※ 정원 20인 이하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시설 제외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지원(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
 - ※ 인건비 지원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의 사업자 부담금 지원. 다만, 시설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 전부 지원
 - ※ 특수보육 지정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 시간연장보육시설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19시 30분이후 보육아동 2명이상 그리고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 민간·가정시설 교사 1인당 100만원
 -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 교사 1명 100만원은 국비보조로 지원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지원
 - ⇒ 민간시설은 교사배치 3명이상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지원
 - 가정시설은 교사배치 2명이상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지원
 - 19시 30분이후 보육아동 1명이상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 교사 월 지급액의 80%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

IV.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 교사 1호봉 80% 적용시 : 1,305,82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구 분	국비보조	시자체 (차액)보조
	시간연장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아동 3명이상인 경우	교사 1인 100만원	305,820원
아동 1명이상인 경우	-	1,305,820원

※ 시간연장보육시설 아동대 교사 배치 및 지원

구 분	아동수	교사수	예산 지원	
			민간시설	가정시설
아동 대 교사 배치 비율	5	1	국비보조로 100만원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차액(305,820원) 추가 지원	좌동
	10	2	국비보조로 100만원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차액(305,820원) 추가 지원	서울형어린이집인건비에서 전액 지원
	15	3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	좌동

▶ 아동연령에 따라 교사배치 달리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시설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1인당 100만원은 국비보조로 지원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305,820원) 추가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최소인원

-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 ✓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8명까지 지원
- ✓ 4세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1명까지 지원
-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최소인원을 기준하는 것은 아님
-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같은 연도 1.1~12.31)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별 정원을 채우고 난 후에 불가피한 경우 추가반, 혼합반 편성
- * 민간시설 서울형의 경우 만2세와 만3세아는 혼합반 운영 불가

-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 인건비는 총산정액에서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 ※ 시비종교시설교사인건비지원시설(5개소) : 당초 시비 인건비 지원조건 유지

-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등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다만, 기능보강비는 제외)
 - *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도 동일 적용
-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현원기준)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 예 : '11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0,200원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 ✓ 주간에는 "A"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밤에는 "B" 24시간보육시설로 이동해 야간보육하는 경우 ⇒ 아동현원 책정시 제외
- ✓ 지원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며 매년 승급적용 (다만, 시설장은 승급없이 매년 1호봉 기준 지원)
- ✓ 가정보육시설장의 교사검직의 경우
 - 교사 인건비 호봉적용
 - 처우개선비 시설장 기준적용, 중식비 없음.

※ 위의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산출액을 지원하되,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 보육료(구. 영아기본보조금, 국·시·구비)를 우선집행하고 부족분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시·구비)로 집행

○ 공 통

①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국공립시설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② 도우미 지원

- 지 원 액 : 월 80만원(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별도지원, 퇴직금 시설 부담)
- 지원조건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중 보육아동 현원 40인 이상 시설

○ 지원시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다음달부터(보육도우미, 환경개선비 등은 별도 지원시점 통보)

다. 급여 호봉기준(민간시설)

- 지원기준
 - ① 종사자의 경력은 인정하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한 신규 지원시 시설종사자의 급여기준을 국공립 시설의 1호봉 적용
 - ②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매년 호봉 승급
 - ③ 시설장은 매년 1호봉 기준으로 지원
- 호봉승급 및 시설이동에 따른 기준
 - ①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
 - ※ 호봉 승급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② 시설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급여호봉으로 인정
- 지급기준
 - ① 시설장
 - 시설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
 - ② 보육교사 등
 -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시설부담으로 조정 지급
- 사업비 부담비율

사업내용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시 비	구 비	
인 건 비	70	30	민간
기타 운영비	70	30	민간
보육도우미	50	50	공통
환경 개선비	100	-	공통

4. 보육도우미 지원

가. 지원대상

-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현원 40인 이상 보육시설 중 보육도우미 채용희망 시설에서 공개채용 방법으로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시설

나. 지원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 인원 외에 채용된 경우에만 지원
- 주요 수행업무
 - 보육운영행정 및 각종 보고업무 등 시설장 업무 보조
 - 보육교사 보조업무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한 업무 등 시설장과 근로계약 체결시 수행업무 결정
- 근무시간
 - 일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지원 하되 해당시설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내용에 의해 최종 확정
 -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하되, 6시간 근무의 경우 3/4에 해당하는 일수 적용
- 기타 임면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시설여건에 따라 근무조건 탄력 적용 가능
 - ※ 조기, 야간근무 등 업무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시설부담으로 인건비 추가지급
 - 경력 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임면 및 관리규정 준용

다. 지원기준

- 지원 : 월 80만원(시 40만원, 자치구 40만원) 및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 기 타
 - 재원부담 : 시 50%, 자치구 50%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식비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됨

5.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도 함께 상실됨

나. 공인 취소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①~⑤항은 정부평가인증 취소 사유와 동일함)
- ① 공인 후 보육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3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보육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종사자 개인의 귀책 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공인 취소와 무관함
-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④ 공인 후 대표자 및 시설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⑤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육시설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보육종사자가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시설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실사자가 해당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시설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 후 참여과정과 공인 유효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⑥ 종사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 ⑦ 사후 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을 위반한 경우
- ⑩ 기타 사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 소재지 변경은 확인방문과정을 통해 정부평가인증이 유지될 경우 공인취소 사유로 보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① 기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다. 공인취소 절차

- ①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에 서면보고
- ② 해당 보육시설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 단, 공인 취소 사유 ④, ⑥, ⑧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의견서 제출 가능
- ③ 시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통보
- ④ 위의 제2항에 불구하고 정부평가인증취소,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을 생략할 수 있음

라. 공인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①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② 보조금 지원 중단
 - 서울형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해당 보조금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추가분, 기타운영비, 보육도우미 등
- ③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 ④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인취소 사유 중 ①, ③항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V. 맞춤(취약)보육시설의 지정·운영

V. 맞춤형(취약)보육시설의 지정·운영

1.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가. 목적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운 영 :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

다.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을 지정한다.

라. 대상시설 및 정원

- 대상시설
 -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우선 지정
 - 민간보육시설
- 정 원 :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시설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가. 목 적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기준보육시간내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보육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또는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정적 사회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나. 운영방향

-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 ※ 24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 입소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장기간(1월 이상) 보육시설에 방치시켜 놓았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에게 보호자 준수사항 및 아동보호조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

다. 지정 대상시설

- 시간연장 보육시설 : 인가된 모든 보육시설
- 24시간 보육시설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되,
 - 기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 '07년부터 24시간시설 신규지정 및 24시간(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됨

라. 시설 및 운영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 바닥 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
- 침구류(1인용), 개인용 옷장, 소화기, 비상약품류 등
- 안전관련 설비
- 아동·종사자 보안 및 안전설비
-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식단) 및 자체 야간보육프로그램 구비
- 기타 야간보육에 필요한 시설

○ 보육교사 배치기준

- 시간연장 보육(19:30~24:00)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24시간 보육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지정

-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24시간 보육시설 지정취소

- 24시간 보육시설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므로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에도 구청장이 지정 취소

3. 시간제 보육시설

가. 목적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재가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대상

- 시간제 보육실을 별도로 설치하였거나 또는 시간제 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설(정원대비 현원이 모두 차지 않은 시설)
-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을 사전에 지정키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

다. 시설 운영기준

- 시설 정원범위내에서 통합보육이 가능하며, 시간제 보육아동을 위한 별도 보육실 마련시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 전담교사 배치기준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종사자 업무량 감안 조정가능)
- 시간제 보육시설 지정
 -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시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중 보육실 별도 마련 등 현지 확인후 지정서 교부
 - 시간제 보육(4시간이하) 이용 아동 등이 보육시설에서 점심을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내에서 중식비를 수납
 - ※ 시간제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시설 지정 신청서(201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참조)제출

24시간(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지정시설
공통 이행사항

-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상에서 맞춤형보육 이용예약, 이용승인, 이용완료 등으로 처리되어야 맞춤형보육아동 인정
-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영유아가 맞춤형보육을 신청할 경우 다른 이용자가 예약가능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보육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 24시간(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아동 현황 <별지 1> 작성·비치
- 24시간(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아동 출석부 구비 및 아동의 귀가시 보호자로부터 귀가시간 확인 (※ 일괄 서명 금지, 당일 확인 원칙)
- 보육료 납부 및 보험 적용 등
 - 외부 이용아동의 경우도 어린이집 통장계좌로 보육료를 납부토록 함
 - 외부 아동이 맞춤형보육을 이용할 경우도 자치구별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입소신청서 작성
 - 12개월 미만의 외부아동이 시간제 등의 맞춤형보육을 이용할 경우는 시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건강 검진 등 검사결과 통보서 확인요청 가능
- 맞춤형보육 기피시설 조치
 - 지정시설에서 맞춤형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는 시정명령, 점검 강화, 3회 이상 발생시는 맞춤형보육시설 지정취소 및 행정 처분

4. 방과후 보육시설

가. 목 적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나. 보육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단, 지역·시설 여건에 따라 정원 범위내에서 4~6학년도 가능)

다. 보육내용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등

라. 설치 및 운영원칙

- 1) '07. 1. 1. 이후 방과후 보육시설 신규 확충은 중단
- 2) '06. 12. 31. 이전 설치비 지원 및 지정(인가)된 시설에만 운영비 시비 지원
- 3) 방과후반 시비운영비 지원내용
 - 정원감소 등으로 기존 시비지원 방과후반 감소 후 이를 대체하는 방과후반에 대해 미지원
 - 일반 방과후반의 경우 기존 시비지원 방과후반에 대해 지원하고 증반시 미지원
 - 단, 자치구 예산배정량 범위 내에서 장애아방과후반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장애아보육시설(전담, 통합)에 설치시 지원

마. 시설장

- 복지관,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에 설치한 부설 방과후 전담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령에서 정한 시설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함
(1개 반인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자격을 갖추었다면 교사 겸직가능)

바.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6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함
 - 방과후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방학기간 중에는 종일제 운영가능

사. 설치비 반납

- 기존 설치비 지원받은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방과후 보육시설을 폐지시 시설 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설치비는 설치일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을 고려하여 1년에 2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하여야 함

방과후 보육시설 인가와 지정에 대한 용어정의

- 방과후 전담보육시설 : 방과후 교실만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구청장 설치인가를 받아 운영
- 방과후 통합보육시설 : 보육시설내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
 - 특수보육시설 지정 신청에 의한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VI. 기타사업 지원기준

Ⅵ. 기타사업 지원기준

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차액지원 - 법정저소득층

○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원)

연 령	구 분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민간보육시설	251,000	197,000	54,000
	가정보육시설	251,000	197,000	54,000
4세 이상	민간보육시설	246,000	177,000	69,000
	가정보육시설	246,000	177,000	69,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123,000 (246,000)	88,500 (177,000)	34,500 (69,000)

○ 지원기준

- 10일 이상 이용 시 전액 지원
- 10일 미만 이용 시 지원 안함 (※ 학부모 추가수납 불가)
 - ※ 이용일은 실제 이용 일을 말함
 - ※ 방학중 방과후도 월 10일 기준으로 종일 보육료 차액지원
- 서울시에 주소지와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 0세아 전담 간호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0세 아를 현원 9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 지원기준 : 간호사 1인 인건비 전액
 - ※ 0세아가 2월 연속(해당월 포함) 6명 미만 일 경우 지원중지

나. 비상근교사 인건비

- 지원목적 : 실질적인 12시간 종일보육을 위하여 8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실비 보상제도 마련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 평일 18:00이후 보육아동이 2개반 이상인 경우 비상근교사 배치
(상근교사 근무시간 09:00~18:00)
- 배치기준
 - 1시설당 당직근무 교사가 필수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교사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비상근교사 배치 운영
 - 평일 18:00이후 보육하여야 할 아동이 당직근무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아동수를 초과할 경우 비상근교사 배치
(3세 이상반 20:1, 2세 이하반 5:1, 영유아 혼합반 15:1)
- 자 격 : 보육교사 1급, 2급, 3급
 - ※ 비상근 교사 배치시 시설장 책임하에 안전보육 확보방안 강구
(예 : 시설장 및 교사 당직제 운영, 비상근교사 교육 철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 ※ 당직교사의 경우 익일 출근시간 조정운영 등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 보육시설 인근의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주부인력 활용
- 지원액 : 1일 4시간 기준 16,000원
 - ※ 최저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에서 일부 부담('11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근무시간 : 탄력적으로 운영

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 지원대상 : 기본 보육시간(07:30 ~ 19:30)이후 최대 4시간 30분 이하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정부지원시설은 시간연장아동 1명 이상일 경우 별도채용교사의 인건비(국비사업)지원되므로 시간연장근무수당(시비사업) 지원 제외
 - ※ 서울형어린이집은 시간연장아동 1명 이상일 경우 별도채용교사의 인건비(시구비 사업)지원되므로 시간연장근무수당(시비사업)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최대 교사 2인까지 연장근무수당 지원
 - 시간당 5,000원, 1인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
예시) 4.5시간×5,000원×25일 = 562,500원
- 교사 배치기준 및 지원
 - 민간 지정시설

시간연장보육 아동수	교사 배치 및 지원		
	계	시간연장교사 별도 채용시(국고)	연장근무수당 (시·구비)
3명~5명	1	1(1)	
10명	2	2(1)	(1)
15명	3	2(1)	1(2)

※ ()는 가정시설

라. 휴일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 지원대상 :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보육시설
- 지원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

마.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 인건비

- 24시간보육시설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보육아동 일평균 3명이상인 경우 :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
 - 보육아동 3명미만인 경우 : 교사 1인 야간근무 1일당 5만원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공통, 시·구비)
- 외부아동 이용 야간보육료 : 시간제 보육료 적용 (시간당 3,000원)
- 휴일보육시설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보육아동 1명이상인 경우 : 교사 1인당 일 5만원 (시·구비)
- 시간제 보육시설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 지원내역

구 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비 고
인건비 지원	국공립	교사 월 지급액의 80%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민 간	교사(1명) 월 100만원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서울형 (민간)	교사 월 지급액의 80%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수당 지원	공 통	교사 1인 1시간당 6,800원 아동 1명 이상시/ 시·구비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미만 이용시

※ 인건비 특별지원 : 시간제보육을 시행하려고 보육정원을 일부러 비워둔 시설 등을 위해 시간제보육실이 별도로 있고, 교사도 별도 채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3개월간 우선 지원, 마지막달 일평균 시간제보육아동이 2명 미만으로 감소 시 4개월째는 지원 중단

바. 대체인력 인건비

- 지원대상 :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모든 보육시설
- 대체인력 : 보육교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지원내용 :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인건비(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 무급휴가인 경우 당해 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로 대체인력 총원

- 결혼 휴가(6일 이내)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사망(5일 이내)
- 5일 이상 보수교육(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해당 안됨)
- 2주 이상 병가(의사진단서 첨부 : 연간 60일 범위내)
 - ※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 겸직 시 지원 불가하나 보수교육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1일 35,000원
 - ※ 보육시설에 기 채용된 비담임교사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불가
- 지원조건 : 대체교사는 근무일 전에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임면보고 된 자에 한하여 지원

<산전후 휴가제도 변경내용>

- 2006. 1. 1 이후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

구 분	지급기간	지원액	비 고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보육시설)	90일	최대 135만원/월	총 근로자 100인 이하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대로 60일 범위 내에서 대체인건비 지원 가능
 -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http://www.jobcenter.go.kr>)

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정부 지원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함)
- 지원기준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전액 지원
 - ※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 ※ 현원이 5명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

아.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
 - ※ 시장방침 제457호(서울시 보육시설 공급시책 개선계획 '03.7.10)
 -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도 시설장 인건비 지원 없음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지원기준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시50%, 구50%)
 - 영아반 : 교사인건비 80% (2개반 이상인 경우)
 - 유아반 : 교사인건비 30%
- 보육료 수납 : 국·공립 보육료 수준

●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시비지원 시설 현황(5개소)

(’10. 12월 현재)

시설명	소재지	정원	설치연도	운영법인
로뎀어린이집	종로구 송인동 20-164	39	2005	송인교회
나사렛어린이집	마포구 상암동 64-3	84	2003	상암동교회
두란노어린이집	강서구 방화2동 538-3	51	2004	두란노교회
아이사랑어린이집	송파구 잠실본동 322-1	39	2004	사랑교회
방주어린이집	강동구 길동 406-1	79	2005	길동교회

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시설장 :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육교사 : 전체시설
 - ※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도 해당
 - ※ 민간시설 대표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겸직하더라도 처우개선비 지급불가(서울형은 제외)
 - ※ 서울형어린이집 중 시설장·보육교사 겸직은 시설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 지급.
 - ※ 동일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시설장으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
 - ※ 동일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 ※ 대체교사에서 정교사로 임명된 경우 : 대체교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월 경과 후 지급

○ 지원기준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시 설 장	정부지원시설	월 195,000원
보육교사	정부지원시설	월 145,000원
	민간시설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보육교사는 국고보조시설 지원 금액 적용

○ 지원조건

-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아동 1명 이상 보육)

※ 유의사항

- 매월 1일기준(1일 공휴일이면 2일기준)으로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종사자로서 보조금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 불가. 단,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원조건에 부합 시 지원가능
- 출산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3개월까지만 지급, 무급휴가자일 경우 복귀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아동대 교사비율을 미 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안 됨
- 변경인가의 경우 2개월 근무기간 인정하여 계속지급

3. 운영비 지원

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반당)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 시설

※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작월부터 미지원

○ 지원금액 및 요건

- 지원금액 : 0세아반(장애아반, 0~1세 혼합반) 월 20만원/반, 1세아반 및 2세아반 월 15만원/반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 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요건

연 령	정 원	지원충족인원(50%이상)
0세(0~1세)반	3명	2명
1세(1~2세)반	5명	3명
2세(2~3세)반	7명	4명

① 모든 보육교사 노동부 임금고시 최저기준보수(처우개선비 미 포함) 이상 지급

※ 민간 장애아 통합시설은 인건비(특수교사)와 운영비(영아반) 중복 지원 불가

※ 2012년 부터는 정부평가인증과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연계할 계획(보건복지부)

③ 국고보조사업 기본보육료 지원 ①~④지원요건 충족하는 시설

○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

- 지원 요건 ①,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영아반운영비 지원을 중단 하고,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영아반 운영비 중 위반한 해당반의 영아반 운영비를 환수하며,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①을 위반한 경우가 영아반 운영비 지원반이 아닌 경우, 0세아반 1개반의 운영비를 환수

- 지원 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허위보고에 의한 영아반 운영비 환수 조치

- 국고보조사업 기본보육료 지원 중단 및 환수 조건 동일(준용)

나.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 지원대상 :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 ※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지원기준

구 분	정부지원시설	기타 지정 시설	비 고
운 영 비	월 550천원/반당	월 1,150천원/반당	
보조교사	월 300천원/반당	월 300천원/반당	

- ※ 정부지원시설 : 국비로 방과후교사 인건비 50%를 지원받는 시설임
- ※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보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함(부득이 미이수 교사 채용 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되 채용 후 6월 이내 보수교육을 미이행 시 지원중단)
- ※ 보조교사의 자격 : 미술, 체육, 피아노 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

○ 지원 방법(최고 3개반까지 지원)

-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준수 시 지원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운영비 지원가능

다.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

- 지원대상 : 장애아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시설에서 장애아 방과 후 반을 편성·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
 - ※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지원기준 : 장애아 3명당 1개반 편성(일반, 장애아 방과후반 최대 3개반까지 지원)

- 운영비 : 월 550천원/반당 (정부지원시설)
 월 1,150천원/반당 (기타지정시설)
 - ※ 정부지원시설 :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00% 지원받는 시설
- 보조교사 : 월 300천원/반당
 - ※ 현원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 운영비 지원 가능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자격기준

- 담당교사 : 방과후 보육교사 또는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에 준함
- 보조교사 : 치료사, 특수교사도 가능

라. 보육교사 중식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형교사 포함)
 - ※ 시간연장형 교사 :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전담교사로 별도 채용한 경우만 해당
 - ※ 시설 운영비로 지원됨
- 지원기준 : 1인당 월 25,000원(월액)
- 정산방법 : 10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지원(10일 미만 근무자는 일할정산 1일 1,000원)

4.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가. 장애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 지원기준 : 장애아 교재교구비 1인당 월 21,000원

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 국·공립·법인시설 우선지원
 - 민간시설 (평가인증 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설)
- 지원기준 : 장애아 보육아동수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금액 : 시설당 10,000~20,000천원
 - 기본시설비 : 10,000천원
 - 장애아(3명) 1개반 설치시 : 5,000천원

- 장애아(6명) 2개반 설치시 : 10,000천원
 - ※ '08년 이후 국공립신축시설에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미지원
- 구비서류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구청장 의견서
 - 자치구 담당자 현장 확인(복명)서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설치, 장비구입, 종사자 채용계획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사 및 장비구입 견적서(사본)
 - 용도, 건물소유관계 등은 자치구에서 관련자료 확인
- 설치비 반납
 - 설치 후 5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폐지·휴지(6월 이상)시 설치비 전액을 폐지·휴지 일로부터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함(기존 시설 포함)

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5. 보육사업비 부담비율

가. 국고보조사업

자치구명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국 비	시 비	구 비	
종 로	20	40	40	
중 구	20	40	40	
용 산	20	40	40	
성 동	20	40	40	
광 진	30	49	21	
동대문	30	49	21	
중 량	30	49	21	
성 북	30	49	21	
강 북	30	49	21	
도 봉	30	49	21	
노 원	30	49	21	
은 평	30	49	21	
서대문	30	49	21	
마 포	30	49	21	
양 천	30	49	21	
강 서	30	49	21	
구 로	30	49	21	
금 천	30	49	21	
영등포	30	49	21	
동 작	30	49	21	
관 악	30	49	21	
서 초	20	40	40	
강 남	20	40	40	
송 파	30	49	21	
강 동	30	49	21	

- ※ 정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 사업비 부담비율은 상기 도표와 같이 시행하고
- 각 자치구의 사회보장비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 조정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 내역 】

구 분	내 용	재원 분담비율(%)		
		국 비	시 비	구 비
A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0미만, 재정자주도 85이상	10	27	63
B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0~24, 재정자주도 80~84	20	40	40
C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미만	30	49	21

- ◆ 사회보장비 지수 : 사회보장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
-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자원) / 세출예산 총 규모

나. 시비보조사업

사 업 내 용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시 비	구 비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70	30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50	50	
- 0세아 전담간호사 인건비	50	50	
- 비상근교사 인건비	50	50	
- 대체인력 인건비	50	50	
-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50	50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0	50	
-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50	
-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50	50	
- 종교시설 교사인건비	50	50	
- 영아반 운영비	50	50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50	50	
- 보육교사 중식비	50	50	
- 장애아 통합 및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50	50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50	50	
-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50	50	
-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및 인건비	50	50	
- 다민족다문화 어린이집 운영비	50	50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	-	
-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	100	-	일부시설부담



Ⅶ.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 기본계획

Ⅶ.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 기본계획

1. 보육시설 지도·점검

가. 기본방향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상시점검체계 확립
 - 보육전문가 활용으로 급식·위생·시설안전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를 시·자치구 점검시 적극 활용, 점검의 실효성 확보
- 보육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취약보육시설(민원야기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확보
 - 자치구간 합동점검 시행으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및 인센티브제 실시
 - 관련규정 위반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 및 불이익 강화 조치
 - 점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모범보육시설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나.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다. 원 칙

-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자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보조금 집행실태 포함)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장은 자치구간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청장은 지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위원회 위원, 보건소 등 위생 및 안전관련 부서, 급식 및 안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지도점검 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치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지도점검 실적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지도점검 체계

- 자치구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보육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점검시설 선정 시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안배 고려
 - 모범 보육시설 서면 점검제 실시
 - 우수 보육시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전년도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현장 지도점검을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단, 민원발생시설은 제외
- 서면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점검 실시
 - 보육시설 서면 점검양식은 <별지 4> 서식과 같음

마. 중점점검 사항

- 지도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

-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 ③ 보육료 등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 ④ 종사자 자격·급여·4대보험, 퇴직금 등 적정 여부
- ⑤ 급·간식 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 ⑥ 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비상대비, 보험가입 여부 등)
- ⑦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
- ⑧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 확인)
- ⑨ 취약보육실시,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
- ⑩ 운영시간 및 보육내용의 적정성
- ⑪ 시설설치기준 준수 등 보육환경의 적정성

바. 보육시설 행정처분 기준

- 지도점검 결과 조치강화
 - 보조금 허위신청 및 목적외 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과 내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처벌기준의 엄격 적용
 - 회계장부 미비치시설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시 까지 보육료(처우개선비 포함) 등 지원 중단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 후, 통계관리 철저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부실운영시설에 대한 불이익 강화
 - 시설운영기준 위반,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 발생 등 부실 운영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모범보육시설 선정, 민간서비스 개선비 지원, 시비 특수지원사업 대상 등에서 제외
- 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적용
 -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제54조에 의거 고발조치 병행

내 용	1차	2차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08.7.28시행)	법제54조에 의거 고발조치 병행	

사. 모범(우수) 보육시설 선정기준

- 서울형 어린이집 중 평가 우수시설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활동결과 우수사례 선정시설
- 취약 및 특수시책 추진시설

2.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가. 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 구성 및 활동
 - 구성인원 : 80명(2인 1조 구성, 학부모 1인 및 시설근무경험자 1인)

Ⅶ.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 기본계획

- 모니터링 기간 : '11. 3 ~ 11월(연중상시)
- 운영방법
 - 사업수행기관 : 서울여성가족재단
- 활동방법
 - 서울형어린이집 포함 전년대비 관리대상시설 선정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분야
 -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아동인권 분야
- 결과 조치
 - 모니터링 결과 공무원 지도점검시 활용
 - 우수시설은 모범보육시설 선정, 인센티브 제공



Ⅷ.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Ⅷ.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 목 적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거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탁 실시하여 최신 보육이론과 기법 습득 기회 및 승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2011 보수교육 계획

- 교육기간 : 2011. 4월 ~ 12월
- 장 소 : 교육과정별 위탁 교육기관
- 대 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시설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제외)
 - ※ 다만 교육비 전액을 자비부담 할 경우 휴직 및 퇴직자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과정 : 4개 과정(일반직무교육 2, 승급교육 2)
 - ※ 특별직무교육은 온라인보수교육과정으로 대체
- 교육시간 : 40시간(직무교육과정) 또는 80시간(승급교육과정)
- 교육인원 : 8,000명(예정)
- 교육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 교육비용
 - 직무교육(일반) : 1인당 6만원(5일 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12만원(10일 80시간 기준)
 - ※ 식 비 - 교육 수료자에게 1일 4,000원 별도 지원(시비50%, 구비50%)
 - 주말반, 야간반에도 지급. 단, 야간반의 경우, 동일 과정의 주간반과 같은 금액 지급
 - 예) 보육교사직무교육 야간반 : 식비 4,000원 * 5일 = 20,000원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부담주체 : 차등보조비용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 지원방법 : 서울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국비·시비·구비 포함 자치구에서 해당 교육대상자(시설)에 지급
 - 직무교육(일반) : 1인당 6만원
 - 승급교육 : 1인당 12만원

3. 교육과정별 대상 및 교육시간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 훈련 시간	비 고	
직 무 교 육 과 정	일 반 직 무 교 육	보육 교사 과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 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 이 경과한 자	40시간	만 2년마다
		시설 장 과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 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만 2년마다
		시설 장 신규 자 과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 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 는 자		시설장이 된 첫해
승 급 교 육		2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 이 만 6개월을 경과한 자	80시간	
		1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 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을 경과한 자	80시간	

- 보육교사 자격 기준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특별직무교육은 온라인보수교육으로 대체
- ※ 교육신청대상 경력기준일 : 교육과정기수별 교육개시일 전일(前日)

4.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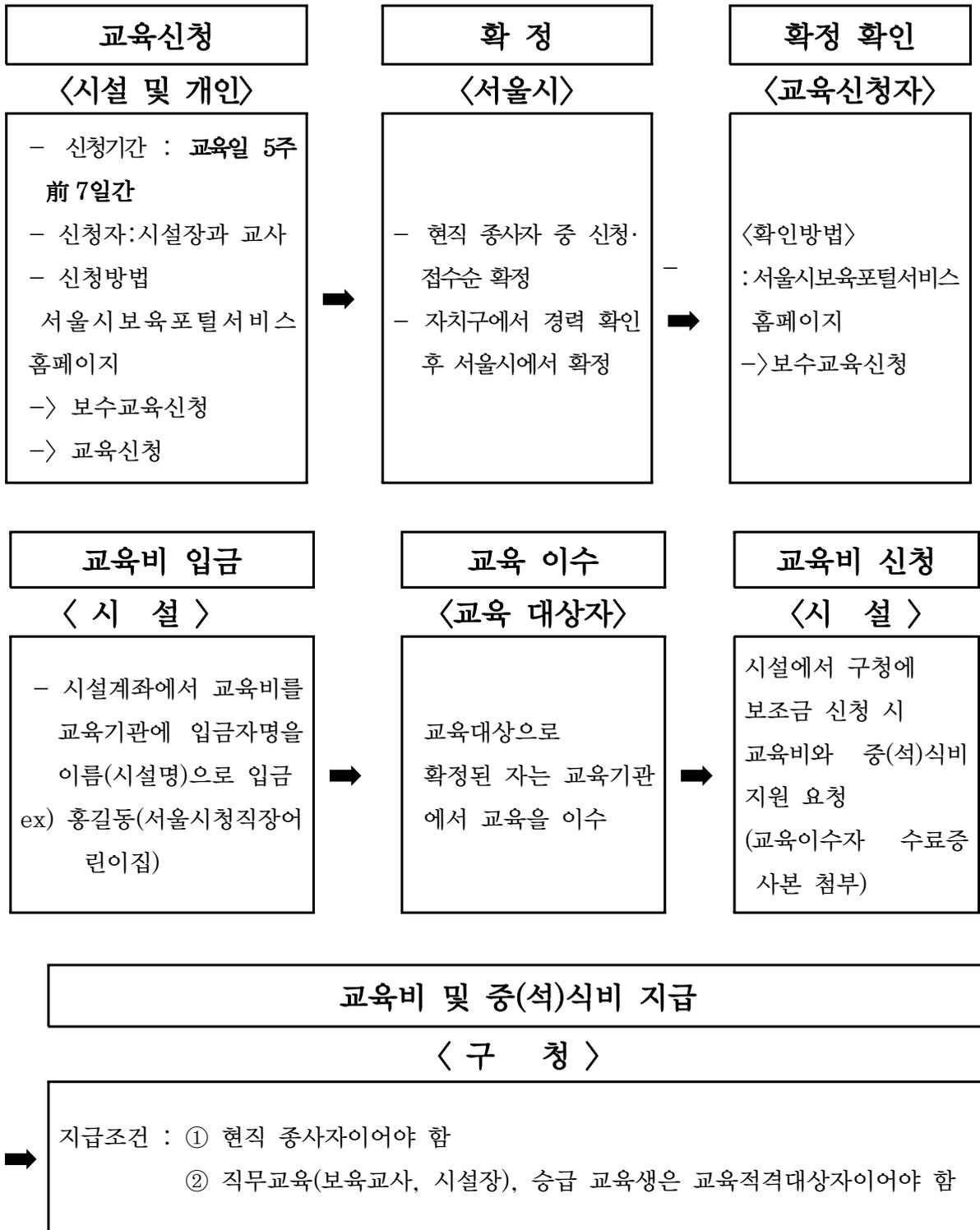
-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5.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 서울시 소재 현직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인터넷 신청·접수순에 의해 선정하되, 교육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 결정 한다.
 - ※ (다만 교육비 전액을 자비 부담할 경우 휴직자 및 퇴직자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 ※ 중(석)식비는 1인당 1식만 지급
- 보수교육(직무, 승급교육 포함)은 1인당 연 1회만 이수할 수 있음.
-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 ※ 단,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취소에 따른 증빙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 홈페이지(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http://iseoul.seoul.go.kr>





IX.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IX.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1. 사업목적

보육시설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적인 보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7조

2. 현 황

- 위 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1번지(3, 4층)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옆)
- 종사자 : 7명(센터장, 보육전문요원5, 전산원)
 - 위탁운영체 : 학교법인 숙명학원
 - 운영 개시 : 2000. 3. 1

3. 이용안내

- 보육정보실
 - 이용시간 :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6:00 (1·3주 근무)
 - On-line 상에서 자료검색
 - 보육관련 정책자료, 보육활동자료, 학회지, 연구논문, 보육프로그램, 부모지원, 상담, 아동관련도서, 비디오, CD등 자료 보유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상 담 실

- 온라인 상담 : 24시간(부모상담, 보육시설상담 으로 구분)
- 전 화 상 담 : 평 일(09:00 ~ 18:00), 1·3째 토요일(09:00 ~ 16:00)

○ 교 육 실

- 센터강좌 및 특강 : 보육시설 종사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 강좌 제공
- 평가인증 조력 : 평가인증 상설교육, 자치구 정보센터가 없는 지역의 평가인증 신청시설 조력지원(상담, 온라인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
- 교육실 대여 : 보육관련 단체 모임 대여

○ 문화 활동 및 홍보안내

- 부모를 위한 점심강좌
- 보육정보지(보육공감) 연2회 소식지 발간

○ 보육전문인력 BANK

- 보육기관, 가정, 보육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필요한 시간에 맞춰 보육인력을 제공
-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Zero화, 보육전문인력의 취업률 향상
- 보육인력 POOL제공 (구인, 구직, 실습기관)

○ 장애아 보육지원

-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전문 상담
- 20개자치구(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4. 2011 추진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정보제공 및 연구조사 사업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 - 데이터베이스 통합·전체 검색 기능 -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 보육정보 제공 - 해외보육동향 (해외연수자료 제공) - 사이버강의 제공 - 일과운영 및 일상적인 상호작용 동영상 제공 - 인력 BANK 운영 - 전자책도서관 제공
	보육정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및 자료 관리 -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기획전시 - 연구 편집 및 제작 (사업안내서, 사업보고서, 운영매뉴얼 등)
시설 지원 사업	교육 및 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 평가인증 조력교육 - 보육관련 인력교육
	상담 및 보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전문가 상담 - 연령별 보육계획안 - 특성별 보육계획안
	취약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보육 지원 - 다문화 보육프로그램 지원
부모 지원 사업	장난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 대여 (온라인 예약 및 무방문 대여 서비스 실시) -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베이비마사지, 유리드믹스, 기타 등) - 양육 상담 운영 - 자유놀이실 무료 운영
	문화활동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지(보육공감) 연2회 발간 - 홍보지 제작
	보육시설정보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찾기 - 내 아이 보육료 계산하기 - 부모들이 알아야 할 육아정책

4-1. 보육교사 연가 시 대체교사 지원

○ 사업개요

-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대체교사 인력을 채용하고, 보육교사의 연가로 대체교사 인력이 필요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지원
 - ※ 보수교육 등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 사업(예산)으로 지원

○ 대체교사 인력 배정 및 채용

- (배정) 권역별 보육교사 비율에 따라 인원 배정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및 예산 집행 및 정산 보고
- (채용)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
 - 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
 - 근무 : 주 5일 근무
 - 지원단가 : 월 1,365천원 (기관운영 사회보험금 100천원 포함)
1,200천원 (임금) + 100천원 (교통비) + 65천원 (퇴직적립금)
 - 관리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 오리엔테이션, 임면보고(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보육교사의 연가(주중 5일/인)사용시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지원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 분할사용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5.5, 10.3)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지원대상) 현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 시군구에 임면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대표자, 대체교사, 비상근교사는 미지원

○ 대상자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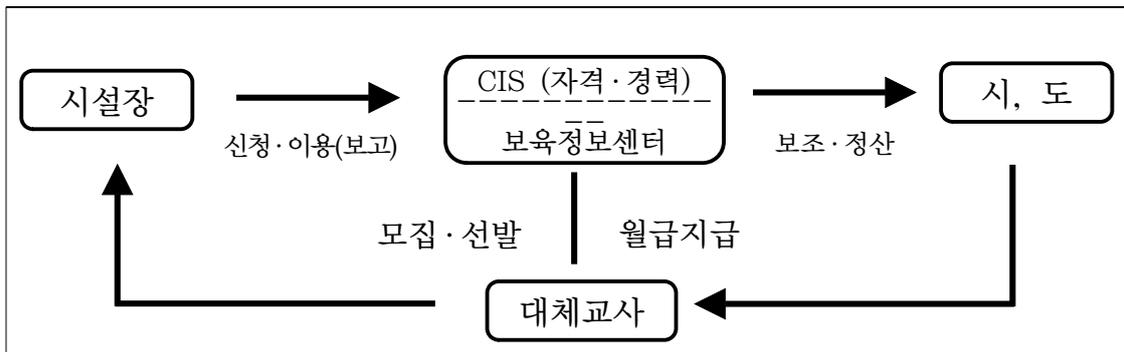
- [신 청]

- ① 시설장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차사용으로 인한 대체교사 신청
- ② 보육정보센터는 신청 시설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시설 확정 후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해 시설에 통보 및 대체교사 지원
 - ※ 필요시 주단위 휴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시설간 조정 및 직권 결정
- ③ 지원 종료 후 대체교사 만족도 조사

- [우선순위]

- ① 소규모(교사 5인이하) 시설의 장기근속자 우선(시설당 1명씩 우선 지원)
- ② 순위 미결정시 평가인증 여부
 - ※ 보육시설 순위선정 시 지원받은 횟수가 적은 시설을 우선 선정기준 추가

< 대체교사 운영 체계 >



5.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현황 (20개소)

연번	센터명	소재지	운영주체	면적(m ²)	설립일	종사자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1번지	숙명학원 (학교법인)	496.9	2000. 3. 1	7 명
1	관악	관악구 봉천동 1517-1	일송학원 (학교법인)	100	1999. 9.15	5 명
2	성동	성동구 성수1가 27-23	한양학원 (학교법인)	85	2005.12.22.	3 명
3	동작	동작구 대방동 385-2 3층	동작복지재단	944	2005.12.29	5 명
4	도봉	도봉구 방학동 306-10	덕성학원 (학교법인)	1,279	2006. 3.29	4 명
5	강남	강남구 청담2동 1-13번지	고향재단 (학교법인)	884	2006. 9. 1	5 명
6	강동 (직영)	강동구 성내동 556-1	직영	444.3	2007. 5. 2	6 명
7	금천	금천구 시흥동 초등1길 10	그리스도 학원재단	702.7	2007. 9.19	4 명
8	서초	서초구 서초2동 1360-26	이화여자대학교 (학교법인)	270.7	2008. 3. 5	7 명
9	노원	노원구 상계동 37-7	한국성서대 (학교법인)	626	2008. 9. 4	5 명
10	영등포	영등포구 신길4동 232-20	중앙대학교 (학교법인)	487.8	2009. 2. 1	4 명
11	성북	성북구 하월곡동 222-6	도시관리공단	664	2009. 7. 1	4 명
12	동대문	동대문구 답십리 542-9	경희대 (학교법인)	325	2009.11.17	6 명
13	종로	종로구 필운동 12번지	배화여대 (학교법인)	303	2009.11. 1	4 명
14	광진	광진구 군자동 117-10	사단법인 나눔복지	214	2009.12.29	5 명
15	강서	강서구 내발산동 산62-16	그리스도대학교	1,100	2009.11.21	4 명
16	마포	마포구 상암동 1686	이화여자대학교	2,145	2010. 2.22	4 명
17	구로	구로구 구로2동 426-6	카톨릭사회복지회	293	2010. 9. 1	3 명
18	송파	송파구 오금동 50	경원대학교	3,074	2010. 9.29	13명
19	은평	은평구 구산동 304-40	명지대학교	330	2010.11. 1	2 명
20	중랑	중랑구 중화2동 321-37	서일대학교	100	2010.12.16	3 명



X.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X.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1. 설치목적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교재교구를 각 가정에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정보, 교육, 상담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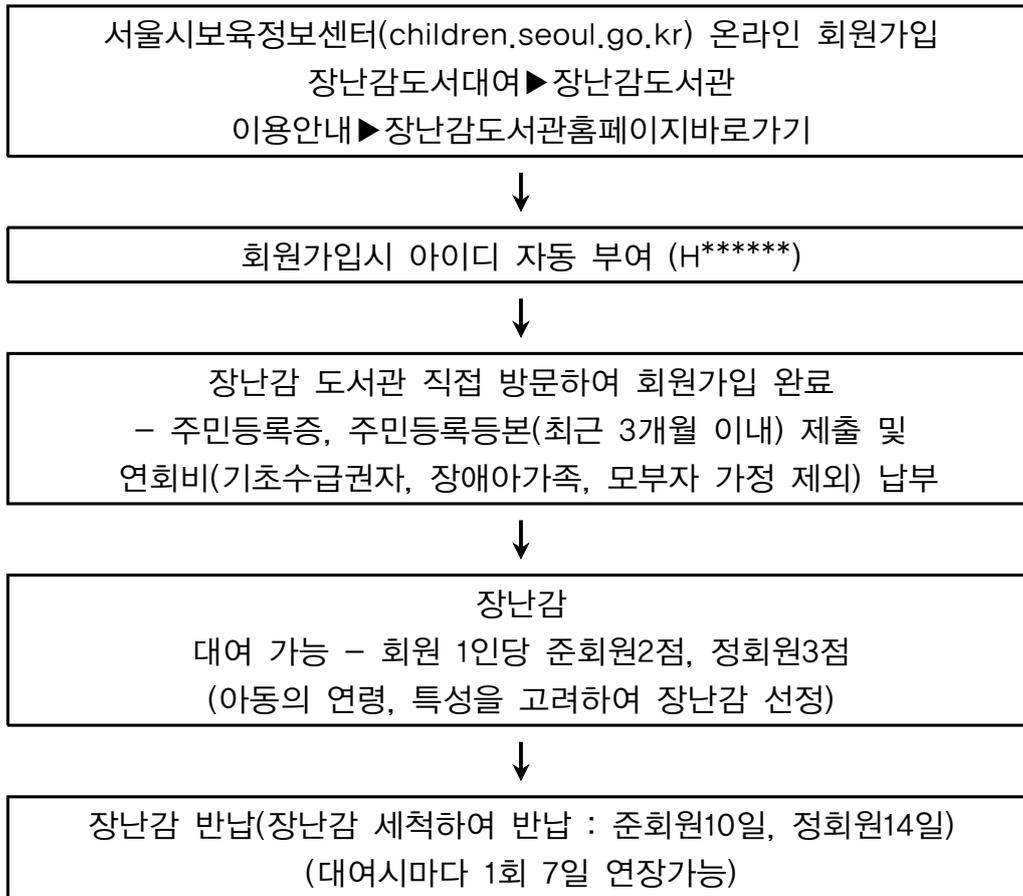
2. 설치개요

- 위 치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역 구내
- 면 적 : 182.5m²
- 운영기관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 비치수량 : 약 8,000여점
- 운영개시 : 2001. 12. 14.

3.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서울시민(연회원 가입 후 이용)
- 이용시간 : 화~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30
 - ※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월요일
- 회원구분
 -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점씩 10일간 대여
 -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4점씩 14일간 대여, 온라인 예약 및 장난감 무방문 대여(택배), 서비스 이용혜택 부여
 - ※ 장애아 보육시설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한함
- 이용방법
 - 녹색장난감회원카드 지참 후 대여, 반납
 - 온라인 예약 가능

○ 장난감 대여 방법



- 회원가입방법 : 장난감도서관 직접 방문(부모신분증, 최근 3개월 내 주민등록 등본제출, 연회비 납부)

4. 주요사업

- 홈페이지 운영 : 장난감도서관 온라인 정보제공
 - ※ 장난감 목록 조회 : http://children.seoul.go.kr/G_library/index.html
- 장난감 대여 :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선택 및 놀이방법 안내, 부모의 경제적 비용 감소
- 자유놀이실 이용 : 다양한 놀이감 경험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위한 장소 제공
- 교환 사업 : 장난감도서관 보유 장난감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과 교환

- 양육지원 프로그램 : 부모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실시
- 부모 상담 :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을 통한 부모역할 지원
- 정회원 대상 온라인 예약 및 무방문 대여 서비스 실시

5. 기증안내

-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물품
 - 어린이에게 교육적으로 유용한 물품
 - 이동이 용이하고 장난감의 부품이 모두 있는 완제품
- ※ 전화(녹색장난감도서관 753-0222~3, 보육정보센터 772-9818)

6. 장난감도서관 설치현황

구별	시설명	운영주체 (개소일)	소재지	프로그램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구 을지로1가 89-1번지 지하철 을지로입구역내 (☎753~0222,3)	장난감,비디오,도서 등 대여 부모상담 양육지원프로그램 자유놀이실운영
도봉구	장난감나라	덕성여자대학교 (2006.3.29)	도봉구 도담마을길24 도봉구보육정보센터 4층 (☎3494~3371)	장난감대여 장난감만들기 아기놀이실운영
강동구	동동레코텍	한국장애이통합실천연구회 (2007.10.1)	강동구 구청앞길 8-1 (☎486~9277,3588)	장난감 및 도서대여(택배) 아동성장발달체크(K-ASQ) 놀이상담 및 놀이프로그램운영
서초구	서초토이조이 장난감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2008.4.11)	서초구 서초2동 1360-26 (☎2155~8678)	장난감,시청각자료, 비디오감상실,놀이세상
성북구	장난감이 좋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09.7.1)	성북구 푸른솔길 11 (☎918~8080)	장난감,도서대여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대치점)	경희대학교 (2009.5.1)	강남구 대치2동 985-1 4층 (☎546-1768~9)	영유아·육아도서,장난감대여 책놀이터,자유놀이실운영 자유놀이실프로그램진행 부모교실·상담실운영
	육아지원센터 (청담점)	경희대학교 (2009.9.1)	강남구 청담동 1-13 (☎546-1736~7)	영유아·육아도서대여 책놀이터·자유놀이실운영 놀이프로그램진행 부모교실·상담실운영
	육아지원센터 (논현점)	경희대학교 (2009.9.1)	강남구 논현2동 114-24 주민센터 내 2층 (☎546-1874~5)	장난감대여 자유놀이실운영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구별	시설명	운영주체 (개소일)	소재지	프로그램
동대문구	느티나무장난감·책방	경희대학교 (2009.11.17)	동대문구 답십리 542-9 (☎2237~5800)	장난감, 도서, DVD대여
종로구	숲속놀이터	배화여자대학 (2009.11.23)	종로구 필운동 12번지 배화여자대학 도서관 3층 (☎399~0890~1)	장난감, 도서대여 체험프로그램운영
강서구	킷킷놀잇감터	그리스도대학교 (2009.12.29) 운영3월예정	강서구 내발산동 산62-16 (☎2064~2730~2)	장난감, 도서대여
광진구	재미씨앗	사단법인 나눔복지 (2009.12.29)	광진구 군자동 117-10 3층 (☎467-1828~9)	장난감, 도서대여
동작구	로야장난감대여점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매봉길 160 상도국주도서관내 (☎02-820-1632)	장난감, 도서, 비디오 대여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한양여자대학	성동구청 지하1층(왕십리로터리) (☎02-2286-6091)	장난감, 도서대여
노원구	놀리아띠	한국복음주의학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7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4층 내 (☎02-930-1944)	장난감, 도서대여
관악구	꿈놀이터	관악구보육정보센터 한림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71-1 2층 (☎871-2836)	장난감대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송파구	송파구놀잇감 대여실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02-449-0505)	장난감, 도서대여
구로구	꿈나무장난감나라 (구로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구로구 구로장터길 48 (구로4동 741-27) (☎02-868-4008)	장난감 전시실, 비디오감상실, 체험장, 놀이실
	꿈나무장난감나라 (개봉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56-5 대림프라자 2층 201호 (☎02-2611-3202)	장난감 전시실, 비디오감상실, 체험장, 놀이실
금천구	금천장난감나라 (시흥점)	그리스도대학교	금천구 시흥초등 1길 19 (시흥1동 841번지) (☎02-894-2221)	장난감대여, 인형극·뮤지컬 공연, 부모교육, 자녀양육 정보 제공, 육아상담
	금천장난감나라 (독산점)	그리스도대학교	금천구 독산동 모아래길(독산1동 151-1) 2층 (☎02-858-5755)	장난감대여, 인형극·뮤지컬 공연, 부모교육, 자녀양육 정보 제공, 육아상담



XI.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운영

XI.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운영

1. 사업 개요

가. 목적

가정내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과 부모 등에게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나. 기본방향

-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의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및 정보나눔터 등 제공
- 임신, 출산, 건강 등 다양한 보육정보의 육아 토털서비스 제공
-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운영

다. 추진목표 : 25개소 설치(자치구별 1개소)

연도별 설치목표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5	4	10	6	5

라. 이용대상

-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영유아 및 학부모
- 교재교구 및 놀이시설이 미비한 가정보육시설 아동 등
- 직장여성 및 아동

마. 주요시설

-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정보 나눔터
-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 도서관
-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 육아상담, 보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정보센터

바. 주요기능

- 정보제공 : 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
 -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제공
 -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연계망 구축
- 육아카페 :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장소
- 교육기능 :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 체험학습 :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 상담기능 :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2. 기본 시설

- 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
- 육아카페(수유실 포함) : 33m²이상
- 시간제 보육시설 : 33m²이상
- 놀이공간 : 20m²이상(아동 1인당 2.64m² 기준)
 - ※ 기본시설외 추가시설은 자치구에서 지역여건, 시설규모, 예산규모 등에 따라 적정 배치

3. 설치 현황

- 운영중 : 18개소 [강동, 도봉, 동작('07), 서초, 노원('08), 영등포, 강남, 성북, 관악, 동대문, 종로, 광진, 강서('09), 마포, 은평, 구로, 송파, 중랑('10)]
- 추진중 : 7개소 [중구, 용산, 성동, 강북, 서대문, 양천, 금천]

4. 지원 내용

가. 분담비율 : 시·구비 50%:50%

나. 지원내용

- 건축비 : 통폐합 동청사 활용시 10억원(행정과 특별교부금)

- 기능보강비 : 1억6천만원('10년 25개 자치구 지원완료)
 -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
 - 시스템 구축비 1억원
- 사업비 : 1억5천2백만원
 - 인건비(3명) : 73,433천원(센터장 1, 운영요원 2)
 - 지원기준 : 센터장(서울시 계약직 "나급" 기준), 운영요원(보육교사 3호봉 기준)
 - ※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처우개선비 등 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운영비 : 79,500천원
 - 사업비 :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및 문화활동, 홍보, 교재교구구입 등
 - 기능보강비 : 대수선 및 장비비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회의비
 - 관리운영비 :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5. 영유아플라자 운영

가. 사업 운영

- 운영 인력
 - 운영총괄 : 보육정보센터장
 - 운영요원 : 2명
- 운영요원 임면·관리
 - 운영요원은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계약직 운영요원으로 공개 채용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임면·관리를 준용한다.
- 회계·물품관리, 장부비치 및 관리
 - 보육정보센터의 회계 및 물품관리, 장부비치 및 관리를 준용한다.

나. 시설 운영

- 시설 운영
 - 시설운영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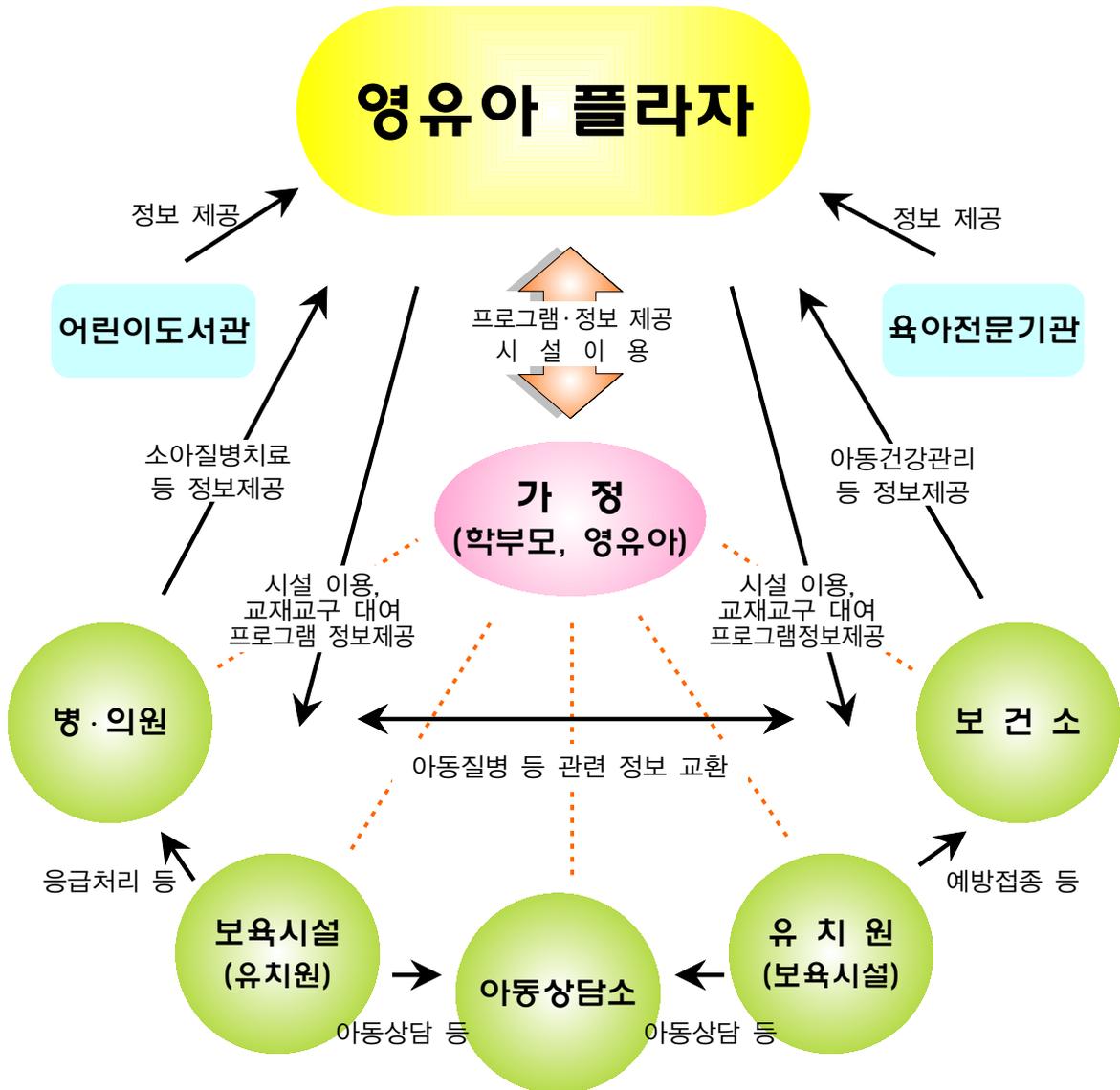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들의 행동 및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환경 관리에 소홀하여서는 안 된다.
- 건강·위생, 안전관리 등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 운영 프로그램

- 장난감 대여실 :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단계,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장난감 목록을 보고 부모나 자녀가 적절한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뿐만 아니라 장난감 만들기, 장난감을 이용하여 상호 작용하기, 장난감 전시회 등 행사 진행.
- 체험학습실 :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하고 제공하며, 연형극, 블록놀이체험전, 전통문화체험마당, 체험전시에 참가한 영유아들의 작품 전시회 등 영유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장으로 운영
- 상담실 :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에서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양육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영유아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놀이시설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실내놀이공간으로써 자녀의 신체발달을 돕고, 부모와 자녀간의 신체를 이용한 놀이 기회를 제공
- 육아정보나눔실 :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육아정보도 나누고, 육아관련 도서나 잡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 시간제 보육실 : 양육자의 자기계발 및 재취업 등 일시적인 돌봄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 독서공간 : 다양한 도서를 부모와 함께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고, 독서하며 생각하는 문화공간으로 영유아와 지역주민의 문화공유의 장으로 운영

다. 운영체계



6. 영유아플라자 운영 현황 (설치순)

(10년 12월 현재)

연번	구별	소재지 (개원일)	규 모	인터넷 주소	주요 시설	비고
1	강동	성내동556-1 ('07.09)	1,987㎡ (지하1,지상3)	http: //gdkid.or.kr	-장난감도서관 -뮤지컬공연장 -맘스카페 -요리체험실	486-3516
2	도봉	방학3동306-10 ('07.10)	1,279㎡ (지상4)	http: //www.doccic.go.kr	-독서사랑방 -장난감나라 -신나는놀이방 -시간제보육실	3494-3341
3	동작	대방동385-2 ('07.11)	944㎡ (지상4)	http: //www.kidsplaza.or.kr	-장난감대여교실 -창의력교실 -육아카페 -시간제보육실	823-4567
4	서초	서초2동360-26 ('08.04)	1,719㎡ (지하2,지상5)	http: //youngua.seocho.go.kr	-놀이감 대여공간 -시간제보육시설 -놀이치료실 -감각체험실	598-9340
5	노원	상계동 37-7 ('08.09)	730㎡ (지하1,지상5)	http: //www.nwccic.or.kr	-육아정보나눔터 -시간제보육시설 -꾸미자람실 -아이자람홀 -아이사랑카페 -문화공연장 등	930-1944
6	영등포	신길4동 232-20 ('09.02.25)	483㎡ (지하1,지상3)	http: //www.ydpccic.or.kr	-북카페 -맘스카페 -교사카페 -세미나룸 -밤동산놀이터	833-6022
7	강남	대치동 985-1 ('09.05.19)	320㎡ (지하1,지상4)	http: //www.gncare.go.kr	-장난감도서관실 -자유놀이실 -책놀이실 -활동실 -상담실 및 수유실	546-1768
8	성북	하월곡동 222-6 ('09.07.01)	1,373㎡ (지하1,지상3)	http: //ijoa.gongdan.go.kr	-세미나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놀이방 -놀이체험장	918-8080
9	관악	봉천동 1571-1 ('09.09.08)	457㎡ (지상3)	http://www.gwanak.go. kr/educare/main.html	-꿈놀이터 -육아카페 -수유실 -프로그램교육장	851-2834
10	동대문	답십리동 542 ('09.11.17)	497㎡ (지하1,지상3)	http: //www.ddmccic.or.kr/	-세미나실 -장난감실, -시간제보육 -카페,상담실	2237-5800
11	종로	필운동 12 ('09.11.23)	169㎡ (지상3)	http: //www.jnccic.or.kr	-하늘놀이터 -맘스카페 -장난감도서관 -엄마놀이터 -상담실	399-0891
12	광진	군자동 117-10 ('09.11.29)	966㎡ (지하1,지상3)	http: //www.gjcare.go.kr/	-장난감대여실 -책도서관 -감각체험실 -신체활동실 -놀이치료실 -상담실	467-1828
13	강서	내발산동 산62-16 ('09.11.29)	1,100㎡ (지하1,지상3)	http: //www.gskids.or.kr	-책꿈터 -어울림센터 -아기쉼터 -반짝놀이터 -지혜터	2064-2730
14	마포	상암동 1686 ('10. 2.22)	2,287㎡ (지하1,지상3)	http: //www.mcic.or.kr	-아가놀이터 -도서관 -아가 쉼터 -목공놀이실	308-0202
15	은평	구산동 304-40 ('10.7.22)	330㎡ (지상 3)	http: //www.empjuccic.co.kr	-놀이카페 -상담실 -장난감대여	351-3629
16	구로	구로2동 426-6 ('10.9.1)	293㎡ (3층)	http: //www.guroccic.or.k	-육아카페 -북카페 -다기능놀이실 -세미나실	859-5432
17	송파	오금동 50 ('10.9.30)	3,074㎡ (지하3,지상5)	http: //kids.songpa.go.kr	-체험놀이실 -공연장 및 휴게실 -북카페 -놀이감 대여	449-0505
18	중랑	중화동 321 ('10.12.16)	200㎡ (지상 2)		-장난감대여 -맘스카페 -시간제보육 -상담실	495-0030



ⅩⅡ. 다문화 다민족 자녀 어린이집 지정 운영

XII. 다문화 다민족 자녀 어린이집 지정 운영

1. 목 적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리 사회 적응을 돕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의 활성화

2.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보육교육)

3. 추진방향

-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지정시설 확대·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리사회 생활 적응이 쉽도록 통합보육 실현
- 양질의 다문화 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4. 연도별 다문화 다민족 자녀 보육시설 지정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목표)	2012년 (목표)
보육시설 지정	17	2	4	3	3	5

※ 서울시 다문화가족 등록 아동현황('10.1월) : 13,849명 (0~5세 9,965명, 6~9세 3,884명)

5. 지원 대상 : 다문화 다민족 자녀 어린이집 지정시설

6. 지원 내용

가. 분담비율 : 시·구비 50%:50%

나. 지원내용

- 교육 기자재비 : 지정시 1회 200만원(시설당)
- 현판 제작비 : 지정시 1회 50만원(시설당)
- 아동과 학부모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비(시구비 50% : 50%)



7. '11년도 추진계획

가. 지정시기 : '11. 4월

나. 지정방법 : 시설이용 수요조사후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위주 선정

다. 운영 내실화 : 사업 평가회 및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프로그램 전파 등

8. 추진현황 : 9개소 지정 운영

가. '08. 7월 시범 운영실시 : 2개소(용산구 사무엘, 영등포구 신일)

나. '09. 5월 지정 확대운영 : 4개소(용산구 짐랜드, 광진구 으뜸, 성북구 베들레헴, 구로구 구로)

다. '10. 4월 지정 확대운영 : 3개소(성동구 제일, 구로구 꿈이 있는, 영등포구 대림2동)

9. 지정시설 운영 안내

가. 다문화 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학부모의 1일 교사제를 통한 다문화 부모님들이 자국에 대한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요리 활동
- 한국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로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
- 부모교육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가정과의 협력활동 전개

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지역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
- 한국어 교실과 부모상담, 가정 방문 양육사업, 부부교육, 미술치료 연계
- 엄마와 함께하는 교육, 동요 배우기 활동 연계

다. 다문화 지원일지 기록 : 다문화 아동의 활동 등 관찰기록(일지)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교류

10. 다문화 다민족 자녀 어린이집 지정 현황

(’10.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번	구별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정원	다문화 자녀	연락처	비 고
1	용산구	사무엘	법인외	이태원1동 181-8	52	18	796-7470	'08. 지정
2	용산구	짐랜드	민 간	한남2동 732-21	39	13	792-0283	'09. 지정
3	광진구	으뜸	민 간	자양3동 482-5	154	7	458-3372	'09. 지정
4	영등포구	신일	국공립	신길1동 465-1	94	13	846-8674	'08. 지정
5	성북구	베들레헴	가 정	성북1동 131-39	20	20	3676-7705	'09. 지정
6	구로구	구로	민 간	구로2동 716-13	49	10	861-5280	'09. 지정
7	성동구	제일	민 간	도선동 365-2	116	107	2294-1656	'10 지정
8	구로구	꿈이있는	국공립	구로2동 476-134	58	57	863-0106	'10 지정
9	영등포구	대림2동	국공립	대림2동 705번지	89	88	832-9909	'10 지정



ⅩⅢ.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XIII.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1. 사업 개요

가. 목적

특수교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동에게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장애아의 발달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정상적 발달 촉진을 위하여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8조

나. 추진방향

-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미지정 모두 지원하는 체계 구축
- 1자치구 1보육정보센터 설치로 자치구별 순회지원 운영

다. 연도별 추진목표

구 분	'07	'08	'09	'10	'11
순회지원 목표(개소)	15	100	150	200	250

라. 지원 대상 :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아 통합시설 및 미지정 보육시설

2. 사업 운영

가. 운영 인력 및 관리

- 운영 인력 : 1명(특수교사)
 - ※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11.보육사업안내 준용
- 운영 요원 및 임명관리
 - 운영인력은 자격 적격 소지자로서 계약직 운영요원으로 공개 채용
 - 운영요원의 임면·관리는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임면·관리를 준용한다.

- 회계·물품관리, 장부비치 및 관리

- 보육정보센터의 회계 및 물품관리, 장부비치 및 관리를 준용한다.

나. 운영체계 : 자치구별 자체 관할지역 운영

다. 지원 방법 :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전문기관과 협약후 치료사 또는 특수교사 지원을 받아 연계 지원

3.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

가. 교사지원

- 특수교사 현장방문 지원 : IEP 적용지도 등 장애 통합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발달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달검사 및 관찰방법, 부모면담 방법과 아동 특성에 맞는 지도 방법을 제시
- 치료사 현장방문 지원 : 통합 환경에서 부족하기 쉬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적인 통합 환경에서 교사에게 아동별 발달단계에 맞는 치료적 접근의 모델제공 및 현장자문
- 시설장 및 교사교육 :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장애유아 및 가족을 위한 실제에 필요한 교육을 워크샵, 소그룹, 대그룹 형태로 진행
- 교사상담 :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교사의 어려움, 종사자간의 협조 어려움, 장애아동의 발달상담 등을 그룹 또는 개별로 지원
- 교재교구 지원 : 장애유아 및 가족을 위한 자료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장난감, 교구, 교육과정관련 자료, 도서, 평가도구 등을 대여 또는 지원

나. 가족지원

- 부모교육 : 욕구 조사에 근거한 주제로 단기 또는 회기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장애 영유아 보육에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촉진

○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상담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집단상담 또는 가족상담 진행

다.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 선별 : 영유아의 발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제공

○ 진단 :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또는 센터 자체내에서 검사를 통해 선별되어진 위험 아동에게 개별적인 오프라인 검사(K-ASQ)로 수시 진행

라.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속 홍보 : 자체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방송 등

※ 장애아 순회지원 운영메뉴얼 : 서울시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08.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발간]

4. 사업비 지원 내용

가. 분담 비율 : 시·구비 50%:50%

나. 지원 내용

○ 인건비 : 23,689천원

※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전문수당 등 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및 운영비 : 11,775천원

- 교사지원 : 치료사·특수교사 지원, 교사교육,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 등

- 가족지원 : 부모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운영, 가족상담

- 조기선별 : 선별 도구구입, 전문가 의뢰

- 관리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회의비



XIV. 보육 정보망 운영

XIV. 보육 정보망 운영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

1) 목적

보육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보육시설 이용신청 및 승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보육시설 입소순서를 온라인상에서 투명하게 관리

2) 주요기능

- 보육시설 정보제공 및 입소 신청에서 승인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휴일·24시간(야간)·시간제 등 맞춤형보육 이용 신청 및 승인 통보(SMS)
- 보육시설 입소 대기자 순번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3) 접속방법

- ▶ 인터넷 포털(네이버, 엠파스 등) 검색창에서 “보육포털”로 검색
- ▶ 인터넷 주소창 : <http://iseoul.seoul.go.kr>

4) 기대효과

- 휴일, 야간 등 보육취약시간대에 일시보육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입소대기자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대기 순번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시설소개란을 통해 보육시설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보육시설 간 선의의 경쟁 유도
- 보육정보의 온라인 제공으로 보육 및 육아정보의 접근성 제고



2. 보육료 지원 사전확인 시스템 이용안내

1) 목적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확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인터넷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

2) 구성내용

- 보육료지원 대상확인 서비스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기본조건 입력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계층 확인
- 보육료지원 제도 : 저소득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기타보육료 등

3) 보육료 지원대상 사전확인 서비스 이용절차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여성가족(<http://women.seoul.go.kr>) 보육 ⇒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hildren.seoul.go.kr>)
-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보육정보⇒보육료 알아보기⇒보육 지원대상 확인

4) 기대효과

- 학부모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득확인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해소
- 洞 복지담당의 보육료 지원대상 문의 민원폭주로 인한 업무과중 해소
- 보육료 지원혜택 누락자 방지 및 대 시민 보육시책 홍보효과 거양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간연장(휴일, 시간제, 24시간(야간) 외부이용) 보육아동 현황

□ 시설명 :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담당교사 :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연락처)	등원 및 · 귀가시간	시간연장 (휴일, 시간제, 야간 외부이용 아동) 보육사유	부 모 서 명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별지] 제2호 서식

24시간 보육아동 현황

□ 시설명 :

□ 20 년 월

□ 24시간 보육교사 :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최 초 입소일	24시간 보육사유	보호자와 연락횟수	귀가횟수
								연락일	귀가일
1									
2									
3									
4									
5									
6									
7									
8									
9									
10									

※ 주간에 동일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과 다른 보육시설에서 옮겨와 장기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 해당

분야	점 검 사 항	확 인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고지서, 영수증 등) ○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확인(현금 지출 불가) ○ 지출항목이 재무회계규칙에 적정한 항목인지 확인 	
보육료 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상한선 및 기타보육료 상한액 준수여부 ○ 보육료 계좌입금 여부(현금수납시 지침 상의 수납처리절차 준수여부) 	
종사자 급여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급여)대장 확인 ○ 계좌이체여부 확인 ○ 봉급명세서 지급 여부 ○ 4대보험료 적정 납입여부 확인 ○ 별도의 퇴직적립금 통장 개설 확인 ○ 매월 법정퇴직적립금액 적립여부 ○ 퇴직교사 퇴직금 지급 또는 중간정산 적정 지급여부 ○ 퇴직금 타용도 유용 여부 	
물품관리 및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비, 교재교구비, 기자재현대화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물품확인 및 적정지출여부확인(물품출납부 대조) ○ 신고증 또는 인가증 개첨 여부 ○ 보육실 반별 아동명단 부착여부 및 정원 준수 여부 ○ 교사·아동비율 준수 등 	

▣ 시설 및 급식안전, 재난대비태세 점검표

부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총평	★ 이번 달, 우리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준비가 되었는가? (위험요소가 없고 안전한가?)		
실외환경	- 보육시설 인근 5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있는가?		
	- 보육시설 주변에 감전위험은 없는가?		
	-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보육실 및 주변	- 1층 보육실에서 옥외로 직접 나가는 출구의 상태는 안전한가?		
	- 모든 보육용품과 비품이 제자리에 있는가?		
	- 실내 바닥에 발을 다칠 곳은 없는가?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등으로 추락의 위험은 없는가?		
	- 보육용품이나 비품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 보육실 내 비품 및 보육용품에 풀린 나사나 못은 없는가?		
놀잇감 및 놀이기구	- 놀잇감의 크기와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는가?		
	- 볼트와 너트 및 부품이 빠진 것은 없는가?		
	- 영유아가 삼킬 만한 작은 놀잇감이 방치되어 있는가?		
	- 움직이는 놀잇감의 바닥에 충격흡수를 할 수 있는 고무판 등을 깔아 두었는가?		
	- 보수가 필요한 놀잇감 및 기구가 방치되어 있는가?		
현관·통로·계단·비상구	- 현관문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가?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어떠한가?		
	-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의 출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부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화장실·세면대	-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방지 장치는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조리실·식당	- 환기가 잘되고 있는가?		
	- 대형 냉장고가 있을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는 안전한가?		
	- 영유아의 출입이 잘 통제되고 있는가?		
	- 가스기구의 안전장치는 어떠한가?		
실외 놀이공간	- 실외 놀이공간의 상태는 양호한가?		
	- 모든 놀이기구 등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그네나 시소 등의 움직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 독초, 잡초 등이 방치되어 있는가?		
	- 바닥에 이물질 (유리조각, 돌부리)이 없는가?		
	- 모든 놀이기구의 밑과 주위(안전지대)에 충격흡수재의 성능은 충분한가?		
	- 부품이 마모되거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인가?		
전기·화기·위험물·차량 안전관리	-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화기 등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대피도, 유도등,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 소화기, 스프링쿨러 등 소화장비의 관리 상태는 적합한가?		
	- 응급용품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		
	- 차량 내 소화기 비치여부 및 비치상태가 적합한가?		
	- 차량 내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의 상태는 양호한가?		
	- 차량의 점검은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승하는가?			



부 록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1. 사회복지사업법령 관련

- 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2항)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이전은 제외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처리 후 시에 결과보고(신원조회포함)
(동법 제18조 제5항)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감사의 추천(동법 제18조 제6항)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임시이사 선임(동법 제20조 제2항)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임원의 해임명령(동법 제22조)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처리 후 시에 결과보고(동법 제24조)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동법 제51조)

지도감독의 종류	대상	주기
정기 지도·감독	법인 시설	최소 매 3년마다 1회 년 1회 이상
수시 지도·감독	시설	필요시 (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특별 지도·감독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 내용 등에 의해 특별 지도 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 법인설립 등 그 외 민원처리사항은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에 진달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 임원의 신원조회 실시 결과 및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에 진달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접수 후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에 진달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접수 후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에 진달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업무

- 예산서(재무회계규칙 제10조)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아야 함 → 제출받은 후 법인 자치구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정기간행물예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 결산서(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로 작성된 것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제출받아야 함 →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20 일이상 공고 하도록 해야 한다)
 - 법인의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제출 받아 20일이상 공고(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정기간행물예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여부 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 그 결과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될 때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 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3. 그 외 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 요령

○ 신고 및 상담방법

- 전 화 : 국번 없이129, 1577-1391, 119
-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산 4-1번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인터넷 : <http://teen.seoul.go.kr>

○ 신고 처리

경찰이나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현장조사를 거쳐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이 이루어지며, 가능한 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득이 하여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를 하게 됨.

※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기 관 명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수서동 산4-1	1577-1391	아동복지전문행정기관 (상담·보호·신고접수)
서울시립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2247-1391	아동치료 전문기관 (상담·보호·치료)
지 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영등포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2층)	834-1391	지역아동학대 예방, 상담, 보호 등
	은평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3157-1391	
	성북	성북구 안암동4가15-6 서진빌딩 (2층)	929-1391	
	마포	마포구 창전동 169-2 (7층)	422-1391	
	강서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성원빌딩(2층)	2654-1391	
지 역 아동복지 센 터	명진	강동구 천호1동 26-18	482-9810	아동양육 및 지역 사회연계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교육, 특수 보육 등)
	서울SOS	양천구 신월동 149-7	2699-9056	
	동명	관악구 봉천동 647-10	886-4396	
	청운	동작구 상도3동 290-1	823-3363	
	지온	강서구 개화동 325-11	2662-3485	
	혜명	금천구 시흥5동 224-1	805-0358	
	영락	용산구 후암동 370	754-6001	
	혜심	용산구 후암동 435-2	755-8459	
	구세군	서대문구 천연동 117-1	372-7937	
	성모자애	노원구 상계동 771-1	937-6900	
	돈보스코	영등포구 신길동 4491	828-3508	
	시온	동작구 상도동 산 60-9	815-8582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41개소, 지역아동센터 214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6개소, 공동생활시설 43개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1999.05.10	조례 제3598호 (제정)
2001.07.16	조례 제3891호 (개정)
2005.09.30	조례 제4306호 (개정)
2008.11.13	조례 제4714호 (개정)
2009.11.11	조례 제4880호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제1조의2(정의)(본조신설 2005.0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08.11.13, 2009.11.11)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 2 장 보육정책위원회(개정 2005.09.30)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9.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09.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개정 2005.09.30)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05.09.30)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05.09.30)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05.09.30)
6. 삭제(2005.09.30)
7. 삭제(2005.09.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11.1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5.09.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3.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5.09.30, 개정 2008.11.13, 2009.11.1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1.07.16, 2005.09.30)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09.30, 2009.11.11)

제6조의2(해촉)(신설 201.07.16)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1.07.1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7.1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01.07.16, 2009.11.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7.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설 2001.07.16)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01.07.16)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7.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7.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09.11.11)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09.11.11)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11)

제 3 장 보육정보센터 등(개정 2008.11.13)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30, 2009.11.11)

②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제11조(설치기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05.09.30, 2008.11.13)

②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08.11.13)

제12조(기능) ① 보육정보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11.13)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개정 2005.09.30, 2008.11.13)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개정 2005.09.30, 2008.11.13)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5.09.30, 2008.11.13)
-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8.11.13)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신설 2008.11.13)
 2. 육아서비스 제공(신설 2008.11.13)
 3. 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신설 2008.11.1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8.11.13)

- 제13조(구성)**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2009.11.11)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또는 체험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 등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 등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11.13)
- ⑤ 센터 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 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등의 장이 위촉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보육시설 종사자
 -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센터 등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방과 후 보육

제15조(보육시설의 설치) 시는 방과 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2009.11.11)

제16조(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개정 2005.09.30)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비 용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2009.11.11)

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개정 2005.09.30)
 2.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05.09.30)
 3. 교재·교구비(개정 2005.09.30)
 4.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개정 2005.09.30)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개정 2005.09.30)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개정 2005.09.30, 2009.11.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개정 2005.09.30)
 8.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5.09.30)
- ②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개정 2009.11.11)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개정 2005.09.30)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센터 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1.13)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신설 2008.11.13)

제6장 보 칙

제20조(교육) 시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제21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13)

제22조 (삭제, 2008.11.13)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가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1991. 1. 14 법률제4328호	제정 1991. 8. 1 대통령령제13444호	제정 1991. 8. 8 보건사회부령제876호
개정 1997. 8. 22 법률제5355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3. 12. 6 대통령령제14015호 (행정관한의임직위탁에관한규정)	개정 1992. 10. 20 보건사회부령제895호 1994. 2. 18 보건사회부령제924호 1996. 1. 6 보건복지부령제16호 1998. 9. 4 보건복지부령제75호 1999. 5. 19 보건복지부령제110호 2004. 6. 11 여성부령제10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정책 1997. 12. 13 법률제5453호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 12. 13 법률제5454호	1995. 5. 19 대통령령제14652호	
1997. 12. 24 법률제5472호	1996. 2. 22 대통령령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1999. 2. 8 법률제5845호	1997. 12. 31 대통령령제15598호	2005. 1. 29 여성부령제14호
1999. 9. 7 법률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8. 5. 6 대통령령제15791호	2005. 6. 23 여성가족부령제1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2001. 1. 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1999. 4. 24 대통령령제16263호	2005. 12. 12 여성가족부령제2호
2004. 1. 29 법률제7153호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13 여성가족부령제4호
2004. 3. 11 법률제7186호(정부조직법)	2004. 5. 24 대통령령제18394호	2006. 5. 12 여성가족부령제6호
2004. 12. 31 법률제7302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5. 30 여성가족부령제329호
2005. 3. 24 법률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 1. 29 대통령령제18691호	2006. 11. 10 여성가족부령제11호
2005. 12. 29 법률제7785호	2005. 6. 23 대통령령제18875호 (여성가족부직제)	2009. 12. 31 보건복지가족부령제154호
2007. 7. 27 법률제8563호	2006. 4. 13 대통령령제19446호	2010. 3. 19 보건복지부령제1호
2007. 10. 17 법률제8654호	2009. 12. 31 대통령령제21956호	2010. 7. 9 보건복지부령제14호
2007. 10. 17 법률제8655호	2010. 3. 15 대통령령제22075호	2010. 9. 1 보건복지부령제18호
2008. 1. 17 법률제8851호	2010. 7. 9 대통령령제22263호	2010. 9. 1 보건복지부령제18호
2008. 2. 29 법률제8852호	2010. 9. 20 대통령령제22395호	
2009. 10. 9 법률제9792호	2011. 1. 20 대통령령제22629호	
2010. 1. 18 법률제9932호	2011. 1. 20 대통령령제22629호	
2010. 2. 4 법률제10012호		
2010. 6. 4 법률제10339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p>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p> <p>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p> <p>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p> <p>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p> <p>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전문개정 2009.6.30]</p> <p>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5></p> <p>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3.15></p> <p>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p>
<p>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양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p>	<p>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p> <p>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p> <p>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p>
<p>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p>	<p>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p>	<p>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사항</p> <p>3.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p> <p>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p> <p>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p> <p>6.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남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p> <p>7.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p>	<p>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p> <p>3. 대표자의 경력사항</p> <p>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p> <p>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p> <p>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p> <p>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 산서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8.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p> <p>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전문개정 2009.6.30]</p>	<p>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p>	<p>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p>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p> <p>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9.6.30]</p> <p>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2010.3.15> [전문개정 2009.6.30]</p> <p>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제8조(보육개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영유아보육법시행령</p> <p>을 때</p> <p>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p> <p>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6.30]</p> <p>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p> <p>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p> <p>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p> <p>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p> <p>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9조(보육 실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행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행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4조(보육 실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행 조사는 가구 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p> <p>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 현황 3. 보육시설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p> <p>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p>	<p>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p> <p>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p> <p>3. 보육시설종사자에 관한 사항</p> <p>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보급관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p> <p>[본조신설 2008.1.17]</p> <p>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p>	<p>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 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p>	<p>제4조의2(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p> <p>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p> <p>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실 및 설비 목록</p> <p>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p> <p>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p> <p>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p> <p>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p> <p>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육시설 인가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9.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기관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p> <p>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p> <p>제5조의2(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p> <p>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p> <p>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p> <p>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07.10.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육시설증서</p>		<p>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7.3]</p> <p>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p> <p>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p>
<p>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p> <p>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p>	<p>[전문개정 2009.7.3]</p> <p>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30]</p>	<p>[전문개정 2009.7.3]</p> <p>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p> <p>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별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p> <p>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p> <p>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9.1></p> <p>[전문개정 2009.7.3]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p> <p>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로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p> <p>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17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별 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p> <p>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p> <p>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p>		<p>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p> <p>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p> <p>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p> <p>2.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p> <p>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 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육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p> <p>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p>[전문개정 2009.7.3]</p> <p>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23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p> <p>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3.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전문개정 2009. 7. 3]</p> <p>제22조(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개정 2010. 7.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p> <p>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로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p>[전문개정 2009.7.3]</p> <p>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p> <p>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한다.〈개정 2010.3.19〉</p> <p>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p> <p>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p> <p>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9.1〉</p> <p>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둬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p> <p>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p> <p>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p> <p>⑧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⑨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전문개정 2009.7.3]</p> <p>제25조(국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 보 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p>[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p> <p>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p> <p>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p>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p>	<p>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p> <p>제27조 삭제 <2006.4.1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p> <p>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9></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p>		<p>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p> <p>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 <p>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 <p>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 <p>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 <p>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p> <p>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헌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p>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p>	<p>을 말한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p>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p>[전문개정 2009.7.3]</p>	<p>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p> <p>[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p>		<p>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교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영유아보육법시행령</p>	<p>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p> <p>[전문개정 2009.7.3]</p> <p>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p> <p>[전문개정 2009.7.3]</p>
<p>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p> <p>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영유아보육법시행령</p> <p>제21조의3(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p> <p>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p>	<p>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 안전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p> <p>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 안전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공제회에 가입한 보육시설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p> <p>⑤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⑥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제 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p>	<p>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총칙 제21조의3은 제21조의7로 이동 <2009.6.30>] [본조신설 2009.6.30]</p> <p>제21조의4(공제회의 정관기제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p> <p>[총칙 제21조의4는 제21조의8로 이동 <2009.6.30>]</p>	<p>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⑧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08.12.19]</p> <p>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3조(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본조신설 2009.6.30]</p> <p>제21조의5(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p> <p>[본조신설 2009.6.30]</p>	<p>제34조(급식 관리)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제6장 비용</p> <p>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영유아보육법시행령</p> <p>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0.3.19></p>	<p>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p> <p>야 한다.</p> <p>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p> <p>[전문개정 2009.7.3]</p> <p>제3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19></p> <p>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본조신설 2008.12.19]</p> <p>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p> <p>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p> <p>[본조신설 2008.12.19]</p>	<p>정 2010.3.15, 2011.1.20></p> <p>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9></p> <p>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p> <p>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터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p> <p>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p> <p>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p> <p>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p> <p>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p> <p>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p>	<p>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p> <p>나.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p> <p>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p> <p>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p> <p>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p> <p>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p> <p>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p> <p>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p> <p>[중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12.31]</p> <p>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p> <p>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 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p> <p>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 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p> <p>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p> <p>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p> <p>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p> <p>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p>	<p>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p> <p>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3.19></p> <p>[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7.3]</p> <p>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3.19></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개정 2010.3.19></p>	<p>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p> <p>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3.19></p> <p>[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7.3]</p> <p>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3.19></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개정 2010.3.19></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p> <p>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p> <p>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p> <p>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p> <p>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진세금을 포함한다)</p> <p>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에인 재확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임목</p> <p>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에 따른 회원권</p> <p>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p> <p>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p> <p>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p> <p>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p> <p>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p> <p>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p> <p>3. 「지방세법」 제196조제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p>	<p>[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7.3]</p> <p>제35조의5(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①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7.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p> <p>[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7.3]</p>	<p>[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7.3]</p> <p>제35조의5(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①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7.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p> <p>[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12.31>]</p> <p>[본조신설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 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p> <p>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9.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 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 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 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 가, 임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 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p> <p>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p> <p>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p> <p>9. 제3항제2호: 제21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채산별 가액</p> <p>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p> <p>[전문개정 2009.12.31]</p>	<p>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p> <p>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19]</p>	<p>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p> <p>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p> <p>5. 연금지출: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p> <p>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p> <p>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p> <p>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9.6.30>] [전문개정 2009.6.30]</p>	<p>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p> <p>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의 동의를 포함한다)</p> <p>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p> <p>4. 가족관계증명서</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호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호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34조의5(조사·질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p>		<p>에 알릴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p> <p>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증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p> <p>[제3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7로 이동 <2009.12.31>]</p> <p>[전문개정 2009. 7. 3]</p> <p>제35조의7(확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 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p> <p>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p> <p>[본조신설 2008.12.19]</p> <p>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p>	<p>제21조의8(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p>	<p>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에서 이동 <2009.12.31>]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가 제34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 기준일 및 조회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p>
<p>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12.19]</p>	<p>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p> <p>[제21조의4에서 이동 <2009.6.30>] [전문개정 2009.6.30]</p>	
<p>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p> <p>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보</p>	<p>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p> <p>②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p>	<p>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 <p>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p> <p>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목개정 2010.7.9]</p> <p>[전문개정 2009.6.30]</p> <p>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p> <p>1.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p>	<p>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전문개정 2007.10.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47조에 따른 교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p>[전문개정 2009.6.30]</p>	<p>영유아보육법</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전문개정 2007.10.17]</p> <p>제7장 지도 및 감독</p> <p>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p> <p>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p> <p>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p> <p>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p>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p> <p>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p> <p>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p> <p>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개정 2008.2.2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p>		<p>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 별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지침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08.1.17]</p>		<p>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p>
<p>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p>
<p>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p> <p>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 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p> <p>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p> <p>제8장 보칙</p>	<p>영유아보육법시행령</p>	<p>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p> <p>제50조(경력의 인정)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정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p> <p>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정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p>		<p>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5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9〉</p> <p>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p>		<p>2. 행정구역상 면 지역</p> <p>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 인원에 관한 사항</p> <p>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p> <p>[전문개정 2009.7.3]</p>
<p>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p>		<p>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p> <p>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보육시설의 장과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p> <p>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p> <p>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p>		<p>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리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p>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p> <p>[제목개정 2009.12.31]</p> <p>[전문개정 2009.7.3]</p> <p>제42조 삭제 <2009.12.31></p> <p>제43조 삭제 <2009.12.31></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영유아보육법시행령</p>	<p>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p>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 [전문개정 2007.10.17]
- 제5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料)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p> <p>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p> <p>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p> <p>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15></p> <p>[전문개정 2009.6.30]</p>	<p>제44조 삭제 <2009.4.1></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부칙 <제7153호, 2004.1.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p> <p>제3조(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p>	<p>부칙 <제14호, 2005.1.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18691호, 2005.1.29></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p>	<p>부칙 <제18691호, 2005.1.29></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p>	<p>부칙 <제18691호, 2005.1.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p> <p>제4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p> <p>제6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력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과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p> <p>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중·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보육시설의 종류</p> <p>3. 보육시설의 소재지</p> <p>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3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p> <p>제4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부칙 <제7302호, 2004.12.31></p> <p>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p> <p>2.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p> <p>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p>	<p>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p> <p>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p>	<p>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6조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제7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p> <p>제9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가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p> <p>⑫내지 ⑭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7785호, 2005.12.29></p>	<p>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p> <p>부칙 <제19446호, 2006.4.13></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②(보육시설은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은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5.6.23></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6호, 제5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 가목(2)(가)①·(사)②, 별표 8의 제1호 바목의 (2),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8563호, 2007.7.27></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p> <p>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p> <p>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명”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명”으로 한다.</p> <p><43> 부터 <80> 까지 생략</p> <p>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p>	<p>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p> <p>부칙 <제2호, 2005.12.1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호, 2006.4.1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654호, 2007.10.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8조·제39조·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②(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p> <p>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p> <p>⑩부터 ⑬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851호, 2008.1.17></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p> <p>부칙 <제21396호, 2009.3.31></p> <p>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585호, 2009.6.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p>	<p>부칙 <제6호, 2006.5.12></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부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 2006.5.30></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⑥내지 <16>생략</p> <p>부칙 <제11호, 2006.11.1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p> <p>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p>	<p>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21956호, 2009.12.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시행한다.</p> <p>부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 2007.12.28></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부터 <7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p> <p>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p> <p>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p>	<p>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94> 까지 생략</p> <p>부칙 <제101호, 2009.4.1></p> <p>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4호, 2009.7.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놀이터에 관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p>
<p>부칙 <제9165호, 2008.12.1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관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부칙 (국립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11호, 2009.3.20></p>	<p>부칙 <제9165호, 2008.12.1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관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부칙 (국립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11호, 2009.3.20></p>	<p>부칙 <제9165호, 2008.12.1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관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부칙 (국립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11호, 2009.3.20></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p> <p>제9조 생략</p>	<p>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제2항제3호나목·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나목·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p> <p>부칙 <제22263호, 2010. 7. 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규칙 시행일까지 갖추지 아니한 보육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놀이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154호, 2009.12.31></p> <p>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p> <p>제3조 생략</p>	<p>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제2항제3호나목·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나목·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p> <p>부칙 <제22263호, 2010. 7. 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고용정책기본법) <제9792호, 2009.10.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p> <p>제3조 생략</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p> <p><8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p> <p>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p> <p>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부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부터 <35>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기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p>
	<p>부칙 <제22629호, 2011.1.2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영유아보육법</p> <p>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p> <p>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p> <p>〈85〉부터 〈137〉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권복지부”로 한다. 〈50〉부터 〈84〉까지 생략</p> <p>부칙 〈제14호, 2010.7.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전자정부법) 〈제10012호, 2010.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5>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9.6.30, 2010.3.15>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보육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9.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위반 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500만원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개정 2005.6.23, 2005.12.12, 2006.4.13, 2009.12.31, 2010.3.19>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늘이 더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④ 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i)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 (ii)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 (iii)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

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iv)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육시설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추 두어야 한다.
-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5.12.12, 2009.7.3. >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축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5.12.12, 2006.4.13, 2009.7.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1.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나.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사본
 -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9.7.3>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교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5] <개정 2009.7.3>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 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 비고

-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6] <개정 2009.7.3>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기준
기본 시설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도서실 1) 교육인원 1명당 0.66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열람좌석은 20석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 관련 도서 2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체육시설·기숙사·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수 있다.

※ 비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준
전임 교수	교육인원 50명당 1명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외래 교수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 보육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의미한다.

[별표 7] <개정 2005.12.12, 2009.7.3>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보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나)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사람과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나. 승급교육: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2. 보수교육의 평가

-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나. 직계가족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교육비

- 가.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5.6.23, 2005.12.12, 2006.5.30, 2009.7.3, 2010.3.19>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1. 명칭

-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나.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6)·10)·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3) 시설 운영일지
-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13) 안전점검표
-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추 두어야 한다.
-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 1)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신설 2006.11.10, 2009.7.3, 2010.3.19>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1. 보육과정의 목적

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율적인 사람
- 나. 창의적인 사람
-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 라. 민주적인 사람
-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2. 보육과정의 목표

보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보육과정의 내용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가.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라.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자연·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동작·극·미술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기므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4. 보육과정의 운영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가. 보육계획 수립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연간·월간·주간 보육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보육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나. 보육과정 편성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 보육과정 실시

보육시설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적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라. 보육과정 운영 평가

보육시설은 보육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마.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다.

5. 그 밖의 사항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개정 2009.7.3, 2010.7.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다.	법 제45조 제1항제1호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4.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부록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 폐쇄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 폐쇄
7.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 폐쇄
8.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 폐쇄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	-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	-

[별표 10] <개정 2006.4.13, 2009.7.3. >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6조 제1호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2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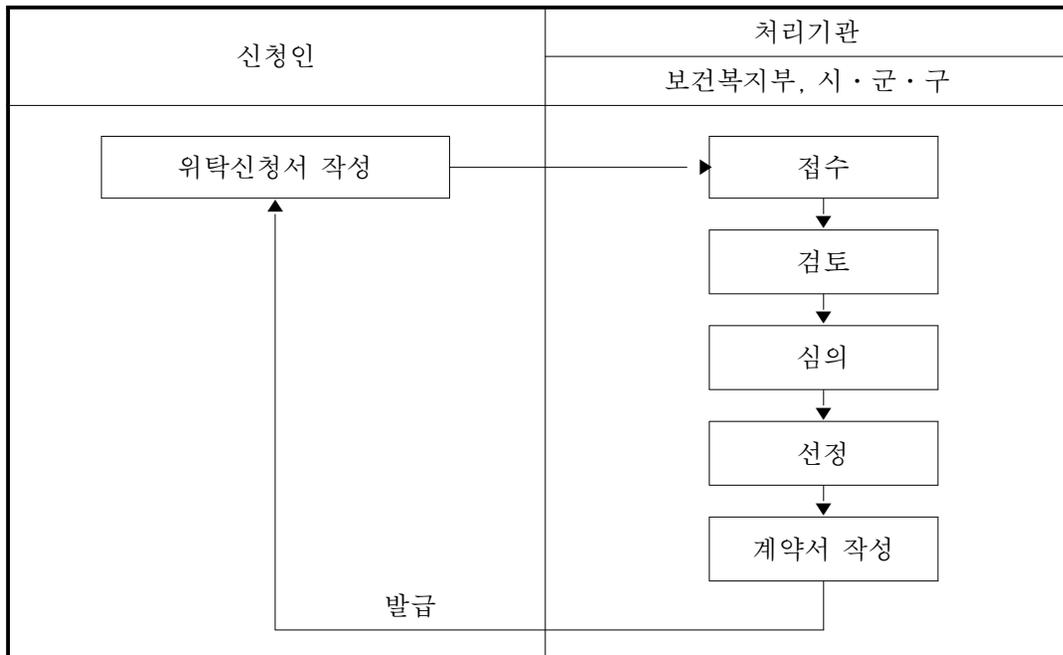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 제1호	2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2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6.23, 2009.7.3, 2010.3.19>

제 호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명 칭:

소 재 지:

법 인 ·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한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센 터 장 성 명: (한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위 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6.23, 2005.12.12, 2009.7.3, 201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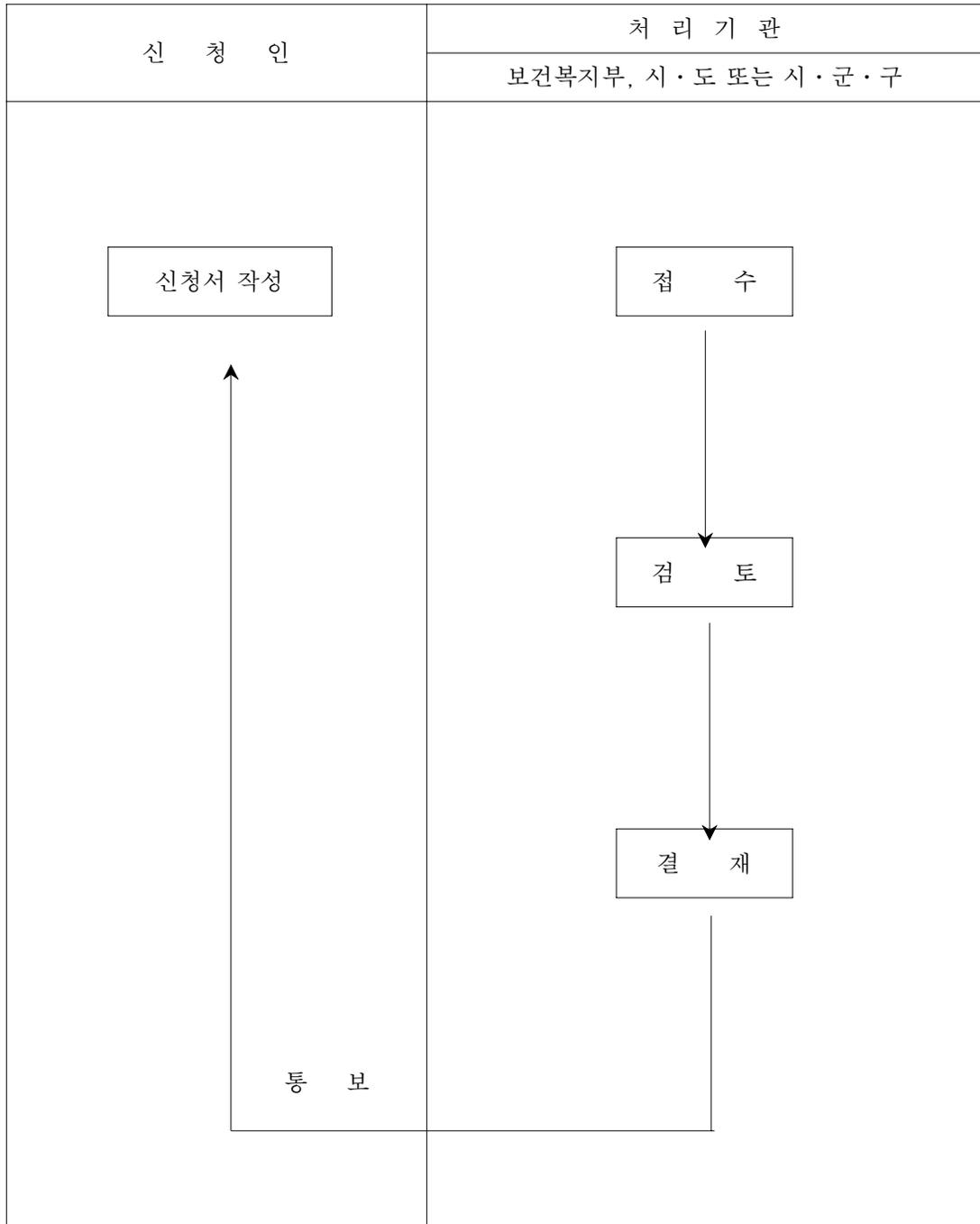
(앞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⑥ 보육정보센터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법인의 정관·단체의 회칙·규약				
⑧ 변경 사유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대표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정관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p>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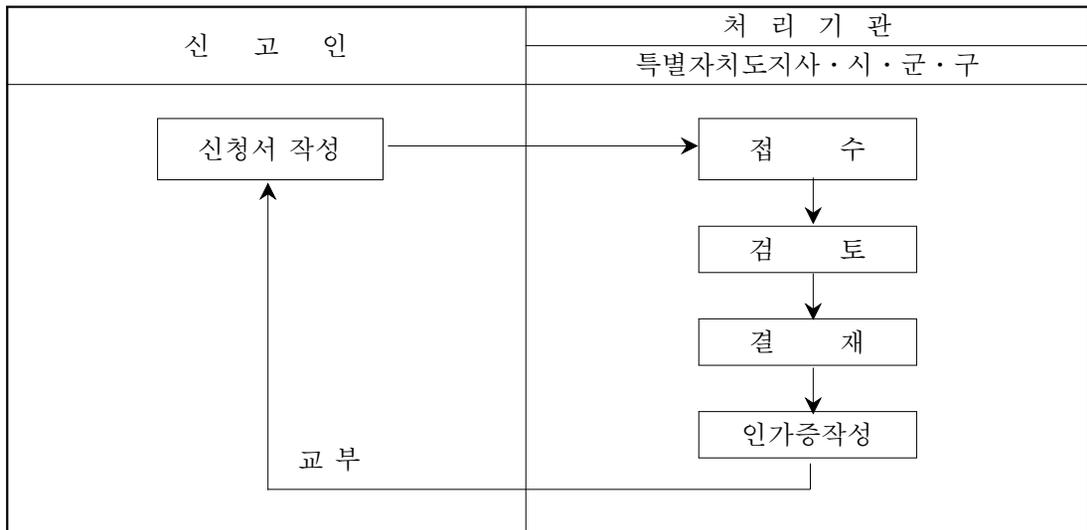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록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12.12, 2009.7.3>

(앞쪽)

제 호

보육시설 인가증

시설명칭:

시설종별:

소재지:

보육정원: 명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보육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특기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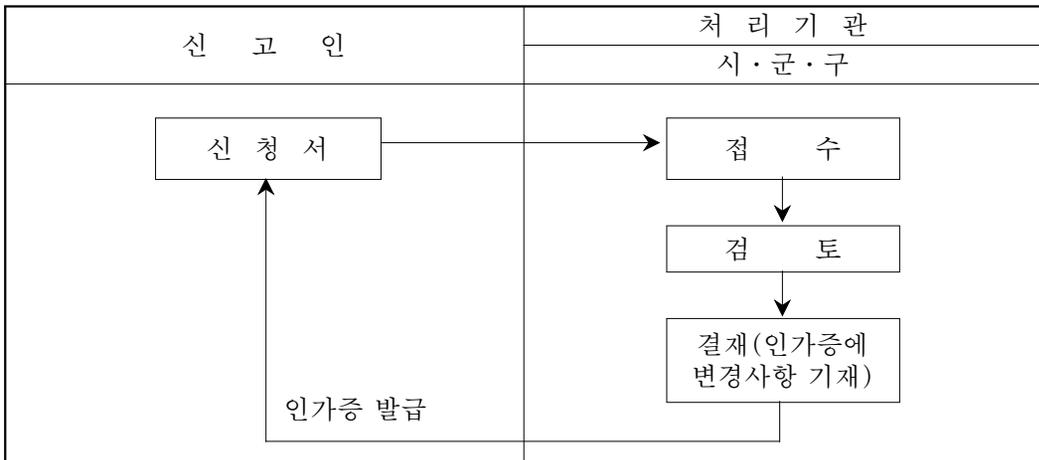
부록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록자(인)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육시설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p>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3>

(표지)

인사기록카드

시설명 :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m²)

(1면)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신장		체중	시력	색명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생년월일		직업	특기			
사 진 명함판 (3cm×4cm)	개 인 신 장		cm	kg	좌() 우()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가 족 사 항															

(2면)

학 령	기 간		학 위	학교명 및 전공학과	기 간		학 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 령	기 간		직 위	근 무 처	기 간	직 위	근 무 처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직 무 · 승 급 교 육	기 간		종 류	학 위	종 류	학 위	종 류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3면)

(성명 :) 승급기록

호	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년월일																
기록자인																
호	방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년월일																
기록자인																

호 병 확 정 근거

경력년수 ~ (년 월 일)	직위 또는 직종 최초: 최종:	경 력			전 력						비고	
		근무기 관	증 명 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 관 명	문서번호 및 일자	회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사정년월일		사정 경력년수	사정 호 방	잔 여 기 간	담	당						
1차 :		년 월 일	호 방	월 일	각	성명	인					
2차 :		년 월 일	호 방	월 일	직	성명	인					
3차 :		년 월 일	호 방	월 일	직	성명	인					

(4면)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포 상 · 서 훈		
주 의 사 항	<p>1. 이 표의 기록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p> <p>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주소(연필로 기입합니다) 및 이 표에 기재되는 인 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합니다.</p> <p>3. 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 연월일만을 기입합니다.</p>	<p>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함</p> <p>본 인</p> <p>년 월 일</p> <p>성명 ①</p>
	기 록 사 항 확 인	<p>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함</p> <p>시 설 장</p> <p>년 월 일</p> <p>(직인)</p>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5.12, 2006.11.10, 2009.7.3, 2010.9.1>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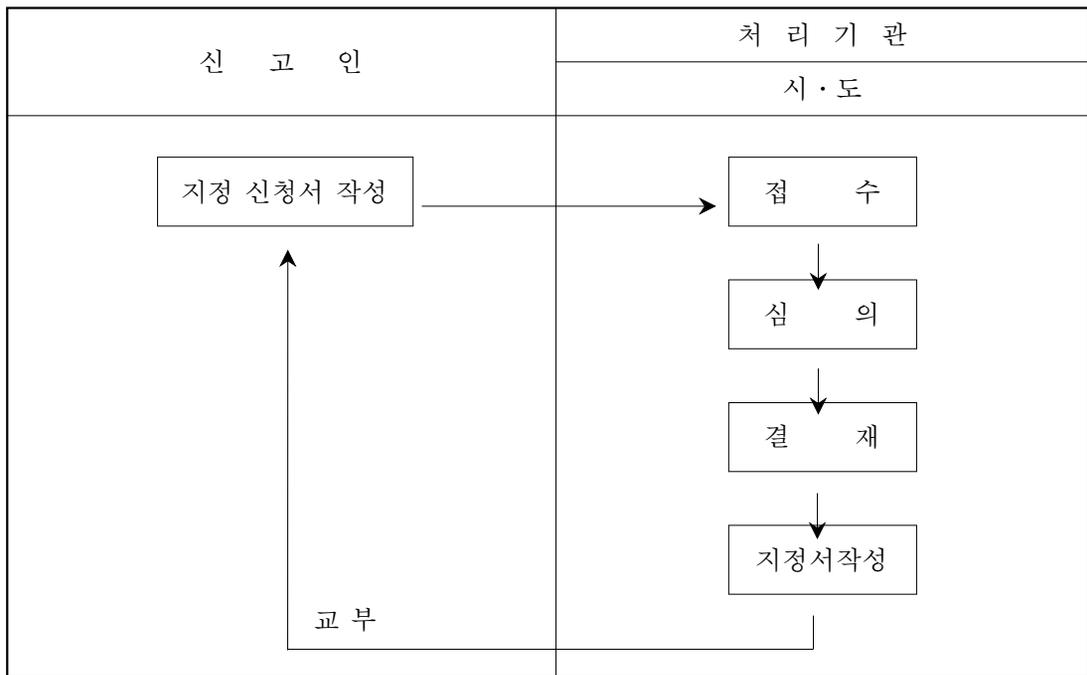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2 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대표자)				②법인명		
	③주 소						(전화:)
	④주민등록번호						
교육 훈련 시설 개요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⑦교육훈련시설 의 장의 성명				⑧운영예정 년 월 일	. . .	
	⑨주민등록번호				⑩1기당 교육 예상 인원	명	
⑪ 시설 설비	강 의 실	m ²	실기·실습실	m ²	도 서 실	m ²	
	교수연구실	m ²	사 무 실	m ²	보 육 시 설	m ²	
	기 타 시 설	m ²	건 물	m ²	대 지	m ²	
⑫교수요원	전 임	명			외 래	명	
⑬교육훈련 과 정	과 목(학 점)				시 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7.3>

(앞쪽)

제 호

교육훈련시설지정서

명 칭:

소재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대표자 생년월일: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한자:)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지정조건:

위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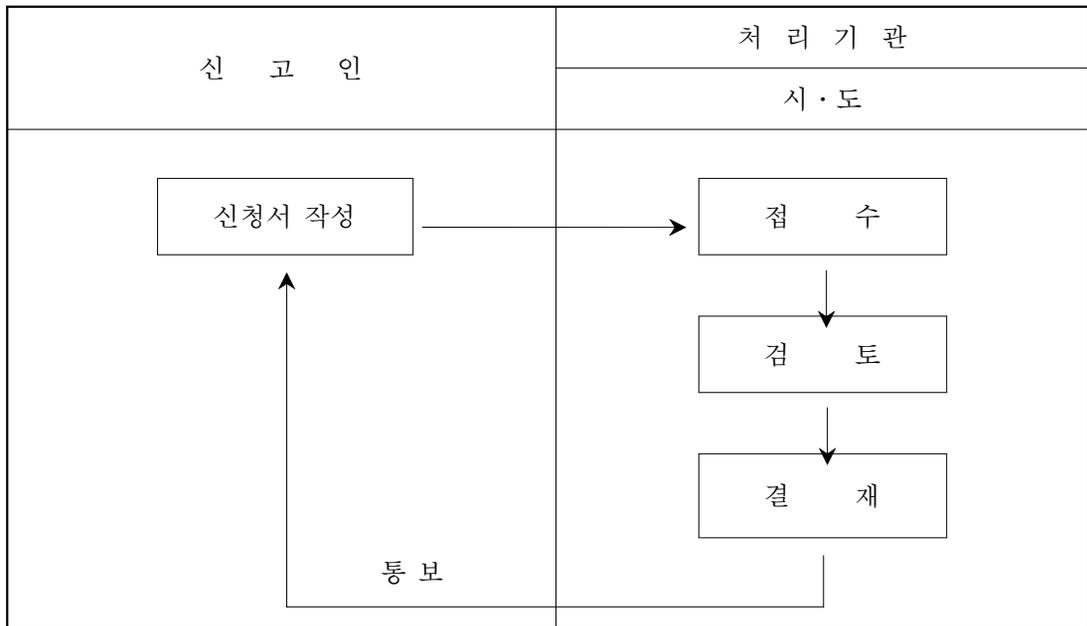
(뒤쪽)

변경사항		
날짜	내용	기록자 [㉠]

(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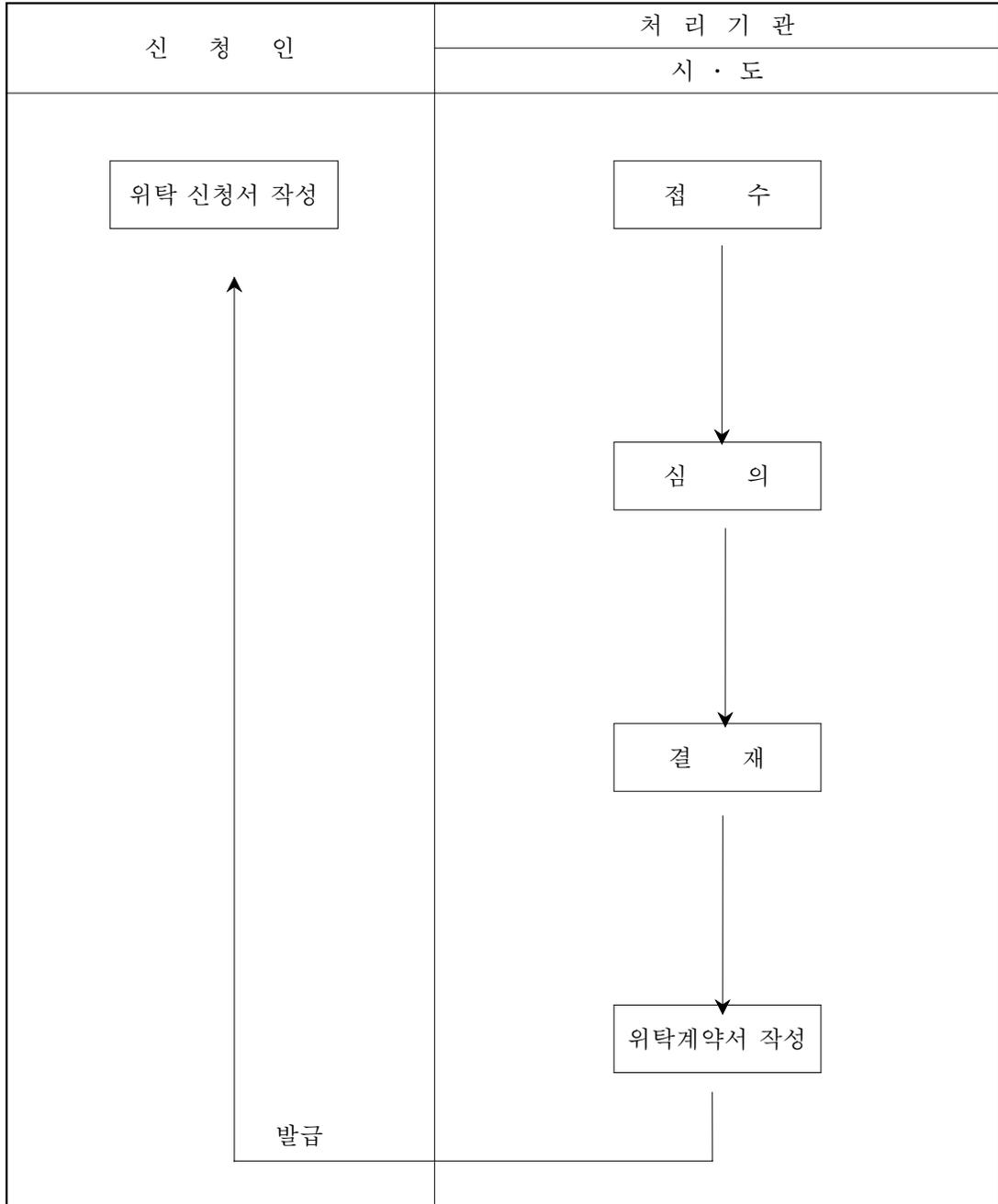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05.12.12, 개정 2006.4.13, 2009.7.3, 2010. 3.19>

제 호		사 진 3cm×4cm
() 자격증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7.3>

제 호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명 칭:

소재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장 성명: (한자:)

기관장 생년월일: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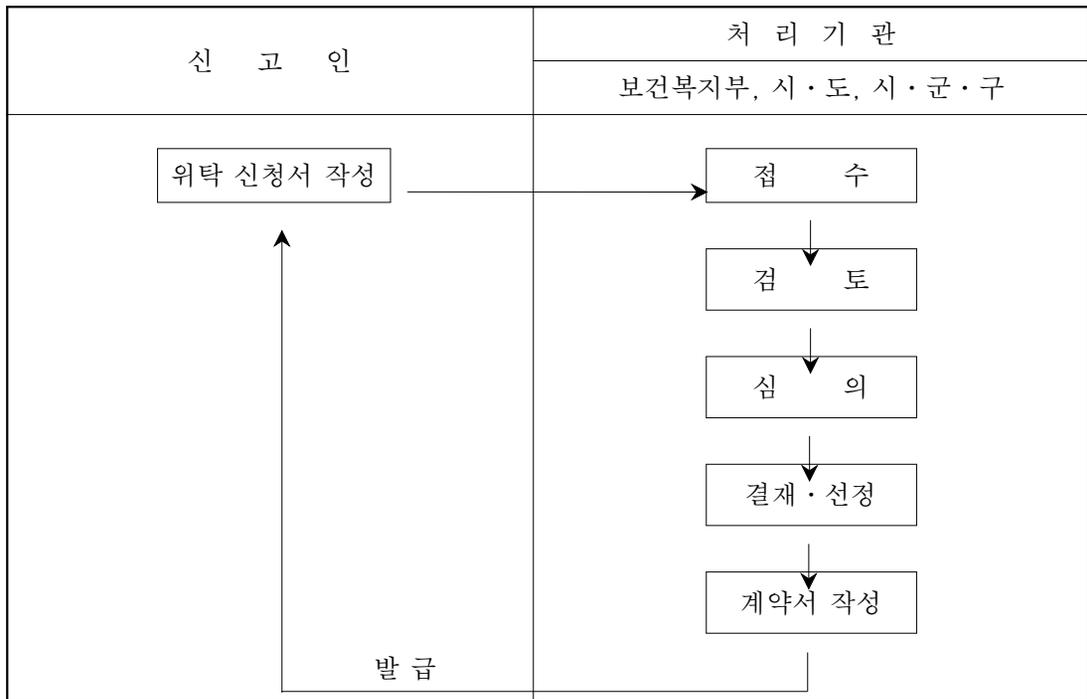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5.6.23, 2009.7.3, 2010.3.19>

제 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

시 설 명 칭:

소 재 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대표자 생년월일: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한자:)

보육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위 탁 기 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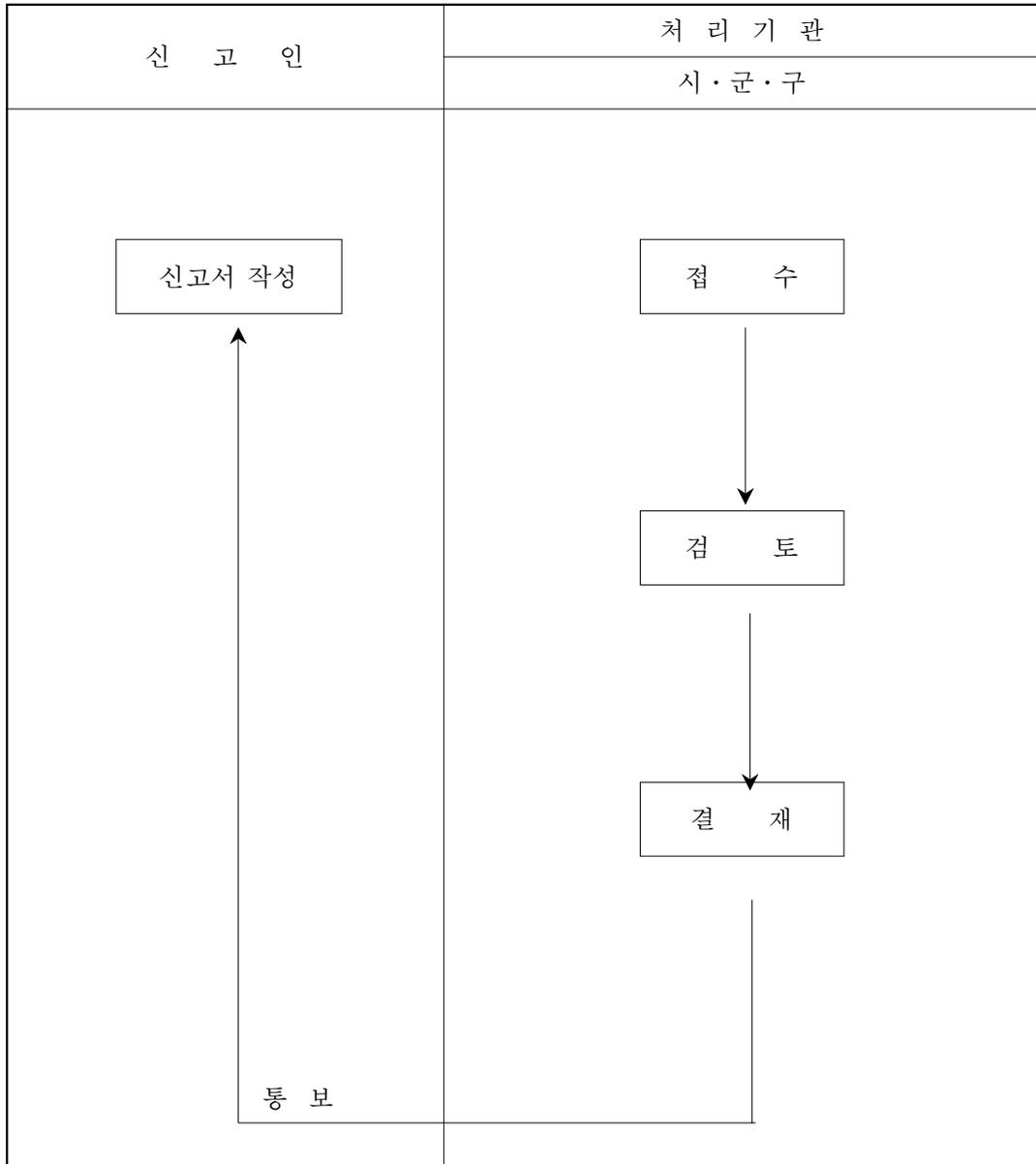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7.3>

이용신청자명부

접수 순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대상별	주 소	전 화 번호	입 소 일자	기록자 ①
<p>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정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인 쇄 : 2011년 3월 일

발 행 : 2011년 3월 일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보 육 담 당 관

♣ 전 화 : 3707-9851~4

♣ 전 송 : 3707-9859

♣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hildren.seoul.go.kr>
